

2018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2018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는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및 각 지역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

●●● 목 차 ●●●

● 2018년도 주요 변경 사항 5~17

I. 치매관리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19~20
2. 단계(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21
3. 사업체제와 5대사업 10
4.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22~28
5. 협의체 및 위원회 29~32

II. 치매관리사업 업무 안내

1.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34~40
2. 조기검진 사업 41~46
3. 등록관리 사업 47~67
4. 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감별)검사비 지원 사업 68~76
5.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77~83
6.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84~86
7.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87~95

III. 치매관리사업 인사·복무와 예산·회계 지침

1. 인사 복무 지침 97~101
2. 예산·회계 지침 102~118
3. 행정 서식 119~150

IV. 부 록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현황 152~178

V.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업무 관련 자료 180~237
2. 기타 관련 자료 238~344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



2018년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치매관리 사업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추진 전략 - 도식도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복지부 도식도 반영 | 19 | 삭제 및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주요사업으로 요약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5대사업으로 요약정리 | 20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서비스지원 - 치매환자가족 : 가족모임, 온오프라인 교육, 건강관리(스트레스 해소, 만성질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서비스지원 - 치매환자가족 : 돌봄부담분석 및 가족상담을 위한 가족카페(힐링프로그램)운영, 온오프라인 가족교실운영, 자조모임지원, 건강관리(스트레스 해소, 만성질환 등) | 20 |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건강센터 운영 -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등 지역사회에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보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강화사업 - 지역유관기관 프로그램 지원 | 20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광역센터 - 조직구성·구성원 - 팀장(상근, 필수) - 팀원(상근, 필수) 5명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계와 5대사업 • 광역센터 - 조직구성·구성원 - 팀장(상근, 필요시) - 팀원(상근, 필수) 8~9명이상 | 21 | 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역할-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추진 - 대상자별(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신규 발굴 및 치매정도별 등록·평가, 추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역할-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추진 - 대상자별(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신규 발굴 및 치매정도별 등록·평가, 추후관리 치매 가족 지원, 가족카페 운영, 인지건강센터 및 기억기움학교(치매환자쉼터) 운영,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비 지원 | 25 |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기준-설치기준 - 시설 건물 기준 : 일반건물 매입 또는 임대, 공공부지 시축, 증축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기준-설치기준 - 시설 건물 기준 : 일반건물 매입, 공공부지 시축, 증축 등 | 25 | 삭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기준-설치기준 [시설공간 가이드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기준-설치기준 [복지부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 26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운영기본지침-조직구성 - 운영인력 : 총 12명 내외(필수인력7명,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조정 가능)(필수인력 7명 : 센터장 1명, 팀장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운영기본지침-조직구성 - 운영인력 : 통합형 기준 적용 예산범위 내 인력조정 가능(필수인력10명이상) | 27 | 수정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 팀원1~2급 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인력 10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1~2급 8명 이상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운영기본지침-치매안심센터 구성 및 기능 | 28 |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구성원 :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관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운영횟수 : 연 4회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구성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운영횟수 : 필요시 | 29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운영위원회-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구성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운영횟수 : 연 4회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운영위원회-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구성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운영횟수 : 필요시 | 29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협의체 - 운영횟수 : 연 4회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협의체 - 운영횟수 : 연 2회 이상(서면회의 1회 가능) | 30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자문위원회 - 구성원 : 위원장인 보건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선정 ①보건소장(당연직)②센터장(당연직)③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④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관계공무원(당연직)⑥이용자의(보호자)대표, 지역주민 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자문위원회 - 구성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선정 ①보건소장(당연직)②센터장(당연직)③공공부문 위원 :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④민간부문위원 :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 31 | 수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전체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현황 및 활동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위원회-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치매사례관리위원회 • 세부내용-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전체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현황 및 활동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홍보, 기억 | 31 |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전체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현황 및 활동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홍보, 기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전체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현황 및 활동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홍보, 기억 | 35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추진방법 홍보물품 배포 : 기억친구 밴드(팔찌), 리플렛 배포 기억친구 관리 : 자치구별 기억친구 DB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리더 경진대회 개최 세부내용-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품 배포 : 기억친구 밴드(팔찌), 리플렛 배포, 기억친구리더 교육자료 제공 기억친구 관리 : 자치구별 기억친구 DB관리,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실적관리 | 35 | 추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홍보프로그램-치매예방 콘텐츠 확산(3.3.3)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치매극복주간 홍보행사-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콘텐츠 개발, 계획서 작성.제출 및 결과보고, 치매극복행사 준비,시행 및 결과보고(행사관련 기획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업로드)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검진 및 상담필수, 치매극복 프로그램 소개 등 | 38 |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치매극복주간 홍보행사-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기획, 행사 주관하여 시행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예방정보제공, 치매극복 프로그램 소개, 치매선별검사, 센터 예방활동 어르신 작품 전시 등 | 39 | 수정 및 추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치매극복 걷기대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 40 | 수정 및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치매 인식도.만족도 조사 대상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이용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치매 인식도.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①치매인식도 조사 : 만 19세이상 서울시민 ②이용자만족도 조사 : 만 19세이상 치매안심센터이용자 ※ 지역구모 등에 따라 조사 대상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 40 | 수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관리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관리-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관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안내 기준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에는 조기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도인지장애 외에도 7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진입자가 포함됨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안내에서는 등록관리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례관 | 49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관리-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일관성 및 기존에 사용해오던 사례관리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등록관리'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기존 사례관리는 맞춤형사례관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사례관리(서울시의 등록관리)와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음 등록관리-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 향상 대상 : 치매환자 가족(치매환자의 가족은 환자 및 가족 본인의 거주지 모두에서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외한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동반치매환자보호 서비스는 치매환자가 등록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 가능)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치매센터 : 광역 내 가족교실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가족교실 운영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 가족교실 운영, 가족교실 참여자 관리 공동 작성 내용 : 돌봄부담분석 평가(희망다이어리, 기타 가족교육 및 지지프로그램 운영 시 공통 적용) 치매환자 가족상담을 통해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부담경감에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 돌봄부담분석을 진행하기 전 돌봄부담분석 이용 신청서(서식 2-㉠)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서식 2-㉡) 작성 ㉢ 돌봄부담 및 부담요인 평가 설문지 한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서식 2- | 51 | 추가 |
| | | | |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p>㉔PHQ-9),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서식2-㉗S-ZBI),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서식2-㉘NPI-Q), 치매태도척도(2-㉙DAS)작성</p> <p>㉕ 돌봄부담 분석 시 PHQ-9의 점수가 5점 이상이거나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6개월 단위로 추적관리</p> <p>㉖ PHQ-9 10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 또는 문제행동(심한 기분변화, 공격적인 행동, 환청/ 망상 증상, 음주, 자살/ 자해 계획 또는 시도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지역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상담의뢰서를 작성하여 연계</p> <p>㉗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연계 시 대상자로부터(타기관용)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㉚)를 받아야 함</p> | | |
| | <p>•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프로그램-‘희망다이어리’운영-운영방법</p> <p>㉑ 5명 이상 인원의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실정에 맞게 운영</p> <p>㉒ ‘희망다이어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기(10회기) 내용 준수하여 진행</p> <p>㉓ ‘희망다이어리’ 운영 후 자조모임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p> | <p>•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프로그램-‘희망다이어리’운영-운영방법</p> <p>㉑ 5명 이상 인원의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실정에 맞게 운영</p> <p>㉒ ‘희망다이어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기(10회기) 내용 준수하여 진행</p> <p>㉓ ‘희망다이어리’ 운영 후 자조모임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p> <p>㉔ 가족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㉛),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㉜) 작성</p> <p>㉕ 가족교실 수강을 위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2-㉝)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㉞) 작성</p> <p>㉖ 8회기 : 가족교실 만족도 평가(서식 2-㉟)</p> | 52 | 추가 |
| | | <p>•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프로그램</p> | 53~55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p>D. ‘희망다이어리’ 외 가족교육 및 지지프로그램(헤아림 등) 운영</p> <p>- 목 적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가족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 향상</p> <p>- 대 상 : 치매 환자의 가족</p> <p>- 주요 내용</p> <p>㉑ 치매알기(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신행동증상, 치매종류별 초기 증상,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p> <p>㉒ 돌보는 지혜(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응용, 치매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찾기, 치매환자 가족의 자기돌보기)</p> <p>- 운영 방법</p> <p>㉑ 헤아림, 휴식공간, 치매가족협회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p> <p>㉒ 가족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㉛),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㉜) 작성</p> <p>㉓ 가족교실 수강을 위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2-㉝)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㉞) 작성</p> <p>㉔ 8회기 : 가족교실 만족도 평가(서식 2-㉟)</p> <p>㉕ 헤아림 운영시 회기별 : 가족일지(서식2-㉟), 회기별 모임 만족도(서식2-㊱) 작성</p> <p>E.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p> <p>- 목 적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간 정</p> | |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p>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원</p> <p>-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가족교실 수료자 혹은 교육은 신청하지 않았으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p> <p>- 지원 내용</p> <p>① 자조모임 개설 및 참여자 등록, 운영지원</p> <p>② 치매상담콜센터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 지정, 자조모임 지원 치매파트너 등록</p> <p>③ 온라인 자조모임 등록</p> <p>- 자조모임 관리</p> <p>① 자조모임 리더 관리를 통한 자조모임 관리</p> <p>② 자조모임 일지를 통한 자조모임 관리</p> <p>③ 모니터링 실시(실무자 간담회,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운영관리, 운영자 교육 등)</p> <p>④ 자조모임 운영자문 및 지원 신청서(서식 2-㉔),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㉕) 작성</p> <p>F. 치매가족 카페 운영</p> <p>- 목 적 :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며 다른 치매환자 및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치매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치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올바른 지식 함양 도모</p> <p>- 대 상 : 관내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구성원, 관내 65세 이상 노인 거주자</p> <p>- 주요 내용</p> <p>① 치매관련 도서 및 리플릿, 인지재</p> | |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p>활 프로그램 교구 등을 비치하여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다과 및 음료 제공</p> <p>⑥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시행 : 힐링프로그램 이용자는 힐링프로그램 이용신청서(서식 2-㉔)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㉕), 운영일지(서식 2-㉖) 작성</p> <p>- 운영 방법</p> <p>① 가족카페 프로그램 일정 고지</p> <p>②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힐링프로그램 진행</p> <p>③ 비치물품 및 다과 운영 관리</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치매환자 사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55~56 | 수정 및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배부 사업-인식표 배부방법 보급희망자가 시.군.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서식 2-㉑),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㉕)를 작성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정보 등록 시 즉시 인식표 일련번호 부여 됨 ⇒ 광역치매센터(인식표 제작의뢰)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인식표 수령 및 배포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보호자 확인절차 진행(후견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에서 확인), 기 제출서류 있을시 추가 제출 안함 ※ 세부내용은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인식표 배부사업 준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배부 사업-인식표 배부방법 보급희망자가 시.군.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서식 2-㉑),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2-㉕) 활용> 제출 ⇒ 자치구치매지원센터(DB 입력) ⇒ 중앙치매센터 (고유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 ⇒ 해당 자치구치매지원센터로 인식표 일괄 발송 ⇒ 보급 희망자 배부 | 58 | 수정 및 추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치매 등록관리 -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 60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 등록관리-치매고위험 등록관리 인지강화 교실 | 61 | 추가 |
| | • 등록관리-정상등록관리-정기선별 검진-대상 - 대상 : 정상노인 | • 등록관리-정상등록관리-정기선별 검진-대상 - 대상 : 정상노인, 인지저하자, 75 세 이상 독거, 75세 진입자 | 61 | 추가 |
| | | • 등록관리-정상 등록관리 - 인지건강센터 운영 참고 | 62 | 추가 |
| | • 등록관리-인지건강센터운영-치매 고위험군 | • 등록관리-인지건강센터운영-치매 고위험군 ① 작성 서류 : 인지강화 교실 이용신청 서(서식 2-㉓),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2-㉔)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 의서(서식 1-㉕), 6개월 이상 계속 이 용 시 인지강화 교실 연장신청서(서식 2-㉖), 인지강화 교실 참여자 사전사후 평가(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시행 MMSE-DS, GDS, SMCQ), 프로그램 운영일지(서식 2-㉗) | 65 | 추가 |
| | • 등록관리-인지건강센터운영-정상 군 | • 등록관리-인지건강센터운영-정상 군 ① 작성 서류 : 치매예방 교실 이용신 청서(서식 2-㉘),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 서(서식 2-㉙),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㉚), 6개월 이상 계속 이용 시 치매예방 교실 연장신청서(서 식 2-㉛), 치매예방 교실 참여자 사전사 후 평가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시행 MMSE-DS, GDS, SMCQ), 프로그램 운영일 지(서식 2-㉜) | 65 | 추가 |
| | • 등록관리-등급 외 경증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 • 등록관리-「기억키움학교」 | 66 | 수정 및 추가 |
| 치료관리비 및 원형 검사비 지원 사업 | • 사업내용-지원절차 | • 사업내용-지원절차 | 73 | 수정 및 추가 |
|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한 봉 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영- 목적 | •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 영-목적 ① (치매극복 선도기업·기관·단체) 지정을 통해 치매극복을 위한 우 | 78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리 사회의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 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 이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 ② (치매극복 선도학교) 치매에 대 한 정기적 교육과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 과정 개발을 통해 재학생이 스 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만 아 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 확립 ③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공공도 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사회 치매정보 허브 구축 | | |
| | • 사업내용-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리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20명이상, 활동인원30명 이상 운영관리 | • 사업내용-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 리-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30명이상, 활동인원50명 이상 운영관리 | 78 | 수정 |
| | • 사업내용-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리 -치매극복선도학교-구비서류 - 봉사모임신청서, 봉사활동보고서, 모임 명부, 교육사진, 협약서 등 | • 사업내용-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 리-치매극복선도학교-구비서류 ① 치매극복선도 기업·기관·단체 신청서(서식 2-㉞) ② 치매극복 선도대학 신청서(서 식2-㉟) ③ 치매극복 선도학교(초·중·고) 신청서(서식 2-㊱) ④ 치매극복 선도 봉사모임 신청 서(서식 2-㊲) ⑤ 치매극복 봉사모임 봉사활동 보고서(서식 2-㊳) ⑥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신청서 (서식 2-㊴) ⑦ 치매도서관 설치완료보고서 작성(서식 2-㊵) •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 영-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요건 •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 | 79 | 추가 |
| | | •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 영-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요건 | 79-80 | 추가 |
| | | •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 | 80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 | 영-치매극복 선도단체 진행방법 | 81 | 추가 |
| | | • 사업내용-지역사회 현황분석 | 81 | 추가 |
| | | • 사업내용-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발굴 | 82 | 추가 |
| | | • 사업내용-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용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인 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 관리 | 86 | 추가 |
| 평가지표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 평가지표, 평가기준 •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사업수행실적-치매 지역자원강화 사업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서, 외부기관 종사자 교육결과보고서, 치매 극복을 위한 봉사 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 • 2018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평가지표 •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사업수행실적-치매 지역자원강화 사업 -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위원회 결과보고서, 외부기관 종사자 교육결과보고서, 치매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 인사복무 지침-인사-기타 제반사항 가)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인력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각 해당 자치구)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94-95 | 수정 |
| 인사복무/ 예산회계 지침 | • 인사복무 지침-복무-휴가 등 규정 | • 인사복무 지침-인사-기타 제반사항 가)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인력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보건소 직영 운영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인사복무 지침-복무-휴가 등 규정 A.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예정 (2018.5.29.시행) / 변경사항 :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예정 (2018.5.29.시행) / 변경사항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c. 특별휴가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 | 99 ~ 100 | 추가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 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 |
|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편성-세출예산 과목 구분(안)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편성-세출예산 과목 구분(안) | 103 | 변경 |
|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집행 ㉠ 회계관리 시스템 : 서울시보조금관리 시스템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집행 ㉠ 회계관리 시스템 : e-리노우(www.gosims.go.kr) | 104 | 수정 |
|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집행 ㉠ 집행금지 항목 개인교육, 출장(외부강의, 심의등)시 출장비 지급불가→개인연가 활용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집행 ㉠ 집행금지 항목 개인보수교육, 외부강의, 심의 등의 출장시 출장비 지급불가→개인연가 활용시 허용 | 104 | 수정 |
|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의 변경 및 전용 ③전용절차 : 항간 이상 전용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 각 소관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예산의 변경 및 전용 ③전용절차 - 항간 이상 전용 시 사구 소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목간 전용 시 센터장이 전용가능, 과목 전용조서 작성 후 소관부서에 보고함 | 105 | 수정 |
|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집행 지침-인건비-기본급 - 센터장 : 주 2일(16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2,11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24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3,139,000원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퇴직금 없음,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 ※ 지원의사의 경우 센터장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집행 지침-인건비-기본급 -센터장 : 주 2일(16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2,11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24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3,139,000원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퇴직금 없음,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 ※ 지원의사의 경우 센터장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105 | 수정 |
|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집행 지침-인건비-기타제반사항 c. 퇴직금의 지급 ㉠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 |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집행 지침-인건비-기타제반사항 c. 퇴직금의 지급 ㉠ 센터에서 총 근무기간이 1년 미 | 109 | 수정 |

| 구분 | 2017년 안내서 | 2018년 안내서 | page | 비고 |
|----|---|---|------|----|
| | <p>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운영비-여비-국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출장 : 4시간 이상 1일/20,000원 산정(월10일 이내로 지급을 제한함) ※관용차량 사용시는 4시간이상 1일 /10,000원 산정 - 관외출장 : 여비(1일20,000원), 교통비(실비), 숙박비(1야당40,000원), 식비(1식7,000원) | <p>만인 직원이 당해 연도 회계정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적립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회계정산 후에 퇴직하는 경우 적립 퇴직금을 반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물가상승률 2.6%반영)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운영비-여비-국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출장 : 1일 4시간 이상 20,000원 산정(관용차량 사용 시 10,000원) 1일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000원 산정(관용차량 사용 시 미지급) ※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을 제한함 - 관외출장 : 여비(1일20,000원), 교통비(실비), 숙박비(1야당40,000원), 식비(8,000원) | 110 | 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사업비-전문강사료 등 지급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사업비-전문강사료 등 지급 기준 B.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기준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사업비-행사운영비 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등 업무추진 시 식사비 1인 7,000원 산정 | 114 |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사업비-행사운영비 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등 업무추진 시 식사비 1인 7,000원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 항목 별 편성 집행 지침-사업비-행사운영비 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등 업무추진 시 식사비 1인 30,000원 이하 | 114 | 수정 |

치매관리사업 소개

I



- 01...사업개요
- 02...단계(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03...사업체계와 5대사업
- 04...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05...협의체 및 위원회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관리,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치매 증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함

나.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역할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전달체계 수립 및 관리·지원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수립 ○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
| 중앙치매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 광역치매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수행 지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수립 지원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간 연계 지원 |
| 광역지자체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 지도 및 감독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교부 및 교부집행 관리 ○ 광역치매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 및 지원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지도 및 감독 |
| 광역치매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수행 지원,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치매관련 자원 강화 및 연계체계 마련 |
| 기초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적 관리 및 지원 |
| 치매안심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 조기검진 사업 ○ 쉼터 운영 사업 ○ 가족 지원 사업 ○ 치매 인식개선·홍보 사업 |

다. 사업 내용(5대 사업)

1)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가) 치매극복의 날 등 행사 개최

나) 전 사회계층 대상 인식개선 활동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시행, 치매극복걷기행사, 치매예방 홍보 등)

2) 조기검진 사업

가) 대 상 : 만 60세 이상

(인지저하자,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저소득층 우선검진)

나) 검진절차 : 상담 → 선별검진 → 정밀1차 검진 → 정밀2차 검진 실시 후 치매 진단

3) 등록관리 사업

가)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 정 상 군 : 정기선별검진, 치매관련 정보 제공 및 인지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 등
-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 정밀재검진(6개월),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제공 등
- 치 매 군 : 인지재활(인지자극)프로그램, 저소득층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 자원 연계, 의료비지원(저소득층),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 치매환자가족 : 돌봄부담분석 및 가족상담을 위한 가족카페(힐링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가족교실운영, 자조모임지원, 건강관리(스트레스 해소, 만성질환 등)

나) 인지건강센터 운영

-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재활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작업, 원예, 운동, 미술, 음악요법 등) 제공

다)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운영

- 대 상 : 등급 외 경증치매환자 중 저소득층 우선(10~20명/일 이용)
- 내 용 : 치매안심센터 내 설치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원인확인검사비 :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으로 1인당 8~11만원 이내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으로 월 3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연 36만원이내)
 - ☞ 전국평균 중위소득 120%이하

4) 지역자원강화사업

가) 전문 자원봉사자(단체)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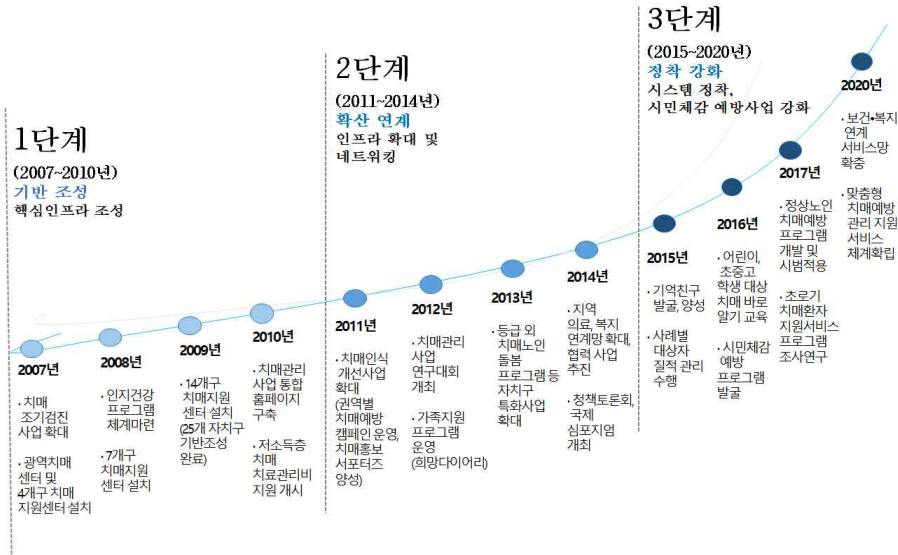
나) 치매관련 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및 관리자, 복지기관 종사자 등) 교육

다) 지역유관기관 프로그램 지원

5)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DB 통합관리(25개구 치매관리사업의 실적관리 및 연계, 정보공유, 정책자료축적 등)

2. 단계(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3. 사업체계와 5대사업



4.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1) 목 적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치매 문제의 해결이라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총괄 기획 및 평가, 사업지침 개발, 표준 프로그램 및 도구 개발, 사업인력교육 및 기술지원, 정보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근 거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나)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95호, 2016.7.14. 개정)

3) 역 할

가) 치매관리사업의 대책 수립 및 운영, 평가

- 치매사업 기획 및 대책 수립, 지침서 개발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및 지표개발
- 사업운영 및 성과 평가, 예산집행

나) 치매 연구사업

- 치매치료, 조호 관련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치매관리사업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방향, 치매사업 효과 등 연구

다) 서울시 및 자치구치매안심센터 기술 지원 및 업무 지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DB관리, 정보, 통계 및 수집 분석 및 제공
- 치매관련 전문 인력 역량강화교육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세미나·학술대회 기획 및 주관

라) 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사업 추진

- 치매예방에 대한 올바른 치매 인식개선사업 추진
- 인식개선 대시민 홍보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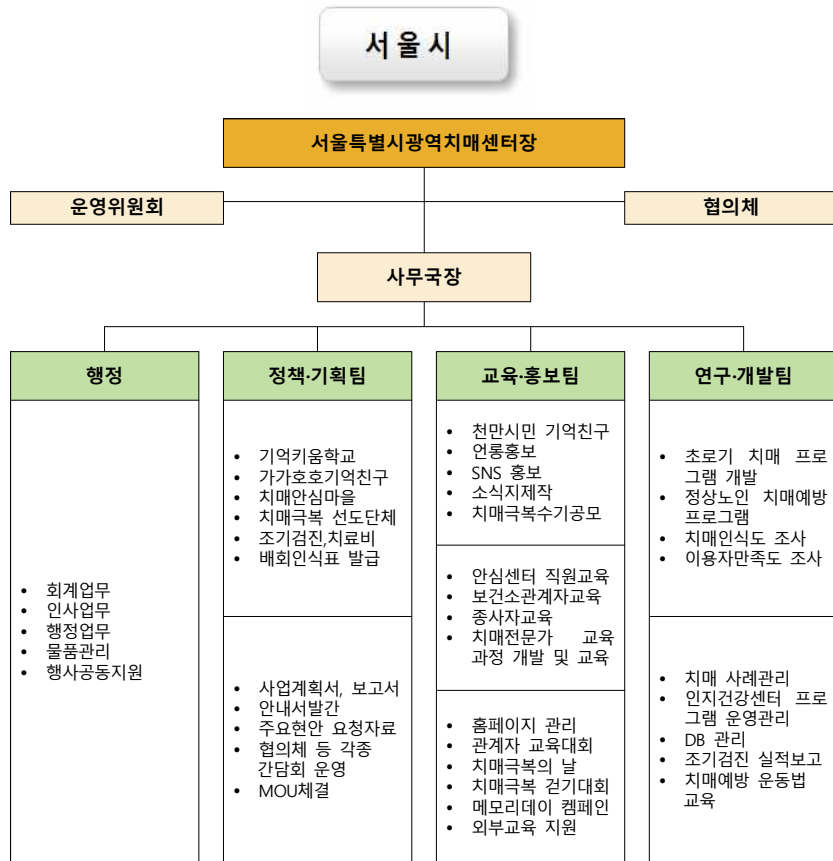
4) 설치·운영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2013. 7월 지정, 보건복지부)

나) 운 영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
- 시설규모 : 310.77㎡(사무실 1, 회의실 1, 교육실 1)

다) 조 직 도



* 센터 장 : 센터 운영 및 사업전반 책임
 * 운영위원회 구성원 : 센터장, 사무국장,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필요시 위원회 추가 설치 가능

5) 운영 기본지침

가) 조직 구성

- 운영인력 : 총 10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8~9명)
 ※ 필요시(사업 규모 변동 등)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구 성 원
 - ① 센터장(비상근, 필수) : 1명
 - 자 격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센터장 자격기준, 주2일(16시간이상) 근무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
 - 역 할 : 센터 운영 전반 책임자
 - ② 사무국장(상근, 필수) : 1명
 - 자 격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역 할 : 센터 업무 전반 사무 총괄
 - ③ 팀장(상근, 필요시) : 1명
 - 자 격 : 간호사 국가면허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역 할 : 정책기획 업무 및 센터 운영 실무 총괄
(각종 회의 운영, 자치구 센터 업무총괄, 직원 지도·감독 등)
 - ④ 팀원(상근, 필수) : 8~9명 이상
 - 자 격 : 보건 의료·복지·행정 분야 등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보건복지 분야 국가면허·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역 할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기획, 사업표준 개발, 홍보, 인력 교육 및 교재개발, DB 관리, 연구사업 수행 등

나.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1) 목 적

서울시의 치매관리사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감별검사)비 지원, 지역 유관 자원연계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 가)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나)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항 제5호
- 다)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라) 각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3) 역 할

- 가) 해당 지역 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평가
- 나) 지역 치매인식개선 사업
- 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추진

대상자별(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신규 발굴 및 치매정도별 등록·평가, 추후관리, 치매 가족 지원, 가족카페 운영, 인지건강센터 및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운영,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비 지원

라) 치매관련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등

3) 설치·운영 기준

가) 명 칭 : 「○○○구 치매안심센터」라고 칭함

나) 운 영

- 운영주체 : 해당 자치구 보건소(직영 또는 위탁운영)
- 수탁 기관의 자격기준 및 역할
 - ①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자치구 내 또는 서울시 내에 있는 의료 기관
 - ②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③ 해당 자치구의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설치 기준

- 시설 연면적 : 430.0㎡ 이상
- 센터의 위치설정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를 고려
- 시설구조 및 설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
- 시설 건물 기준 : 일반건물 매입, 공공부지 신축, 증축 등

[복지부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 구 분 | | 통합형 | 거점형 | 방문형 | 소규모형 | |
|--------|----|---------------------------------|--------------------|--------------------|-----------------------------|----------------------------------|
| 주요 서비스 | 공통 | 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관리, 인식개선 및 홍보 | | | | |
| | 쉼터 | 개소 | 1~2 | 2~4 | 1(소규모) | |
| | | 설치 | 별도설치 외 기존 자원 이용 가능 | 별도설치 외 기존 자원 이용 가능 | 지역사회 거점 공간방문 활용 (경로당 미술관 등) | 별도 설치 또는 기존 유관시설 연계 활용 (노인복지관 등) |
| | 카페 | 개소 | 1 | 1 | 1(소규모) | 별도 설치 또는 기존 유관시설 활용 |
| 기능 | |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돌봄부담분석, 정보교환 등 | | | | |
| 시설 | 구성 |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 | | | |
| 적합 지역 | 규모 | 광역시,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도서지역, 소도시 | |
| | | 면적 | 좁음 | 넓음 | 넓음 | 좁음 |
| | 특성 | 노인인구 | 보통 | 높음 | 높음 | 다양 |
| | | 접근성 | 높음(교통 편리) | 낮음 | 낮음 | 다양 |
| | | 유관자원 | 많음 | 보통 | 적음 | 보통 |

- 반드시 1㎡당 설치비를 150만원으로 설정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되, 설치면적 대비 90% 범위까지 설치 허용

※ 설치비 대비 설치면적 : 1㎡ 당 150만원 적용한 규모예: 설치비 12억원인 경우 설치면적 800㎡

-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소유의 별도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신중축*하는 경우 설치비 대비 설치면적을 70% 범위까지 허용

* 완전 리모델링인 경우 증축에 준함

[예시] ○○○구 치매안심센터]

| 구 분 | | 실 수 | 면 적(㎡) |
|-----|-----------------|-----|--------|
| 1층 | 화장실 | 1 | 30.8 |
| | 사무실 | 1 | 16.2 |
| | 상담실 | 1 | 8.9 |
| | 검진실 | 3 | 44.3 |
| | 거실 및 휴게실(가족 카페) | 1 | 27.5 |
| | 센터장실 | 1 | 8.9 |
| | 엘리베이터 | 1 | 29.1 |
| 2층 | 화장실 | 1 | 30.8 |
| | 샤워실 및 탈의실 | 1 | 16.2 |
| | 처치실 | 1 | 17.8 |
| | 인지건강 프로그램실 | 3 | 59.6 |
| |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 1 | 66.11 |
| | 거실 및 휴게실(가족 카페) | 1 | 26 |
| | 엘리베이터 | 1 | 29.1 |
| 3층 | 화장실 | 1 | 30.8 |
| | 거실 및 휴게실(회상치료실) | 1 | 16.2 |
| | 인지건강 프로그램실 | 2 | 45.3 |
| 계 | | | 503.61 |

※예시는 공간구성의 참고사항, 해당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라) 구비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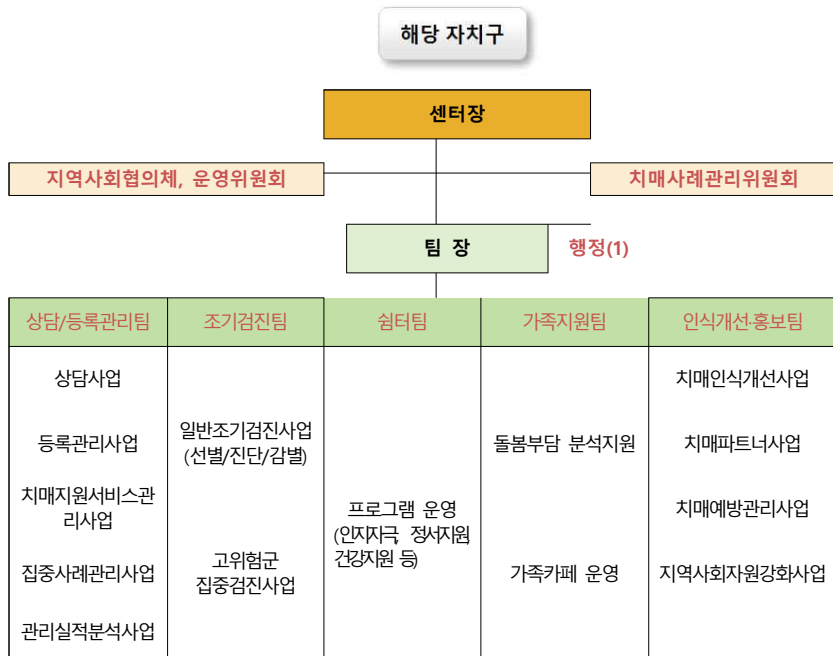
- 사무기기 및 가구류 : 사무실 집기,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 가구류 등
- 전자제품 : TV,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등
- 의료용 장비 : 활력징후 측정 장비, 휠체어, 안전장비, 검진 및 처치실용 침대, 기본 처치 기구 세트 등
- 차량 및 기타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관련 장비

4) 운영 기본지침

가) 조직구성

- 운영인력 : 통합형 기준 적용 예산범위 내 인력조정 가능(필수인력 10명 이상)
 ※ 필수인력 10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1~2급 8명 이상

[조직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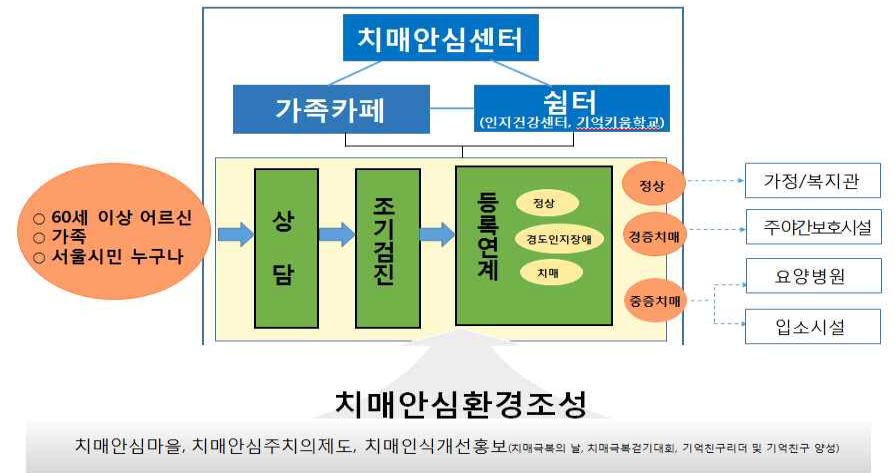
※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구 성 원

- ① 센터장(상근 혹은 비상근, 필수) : 1명
 - 자 격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센터장 자격기준 준용, 주2일(16시간) 근무(단, 자치구 협약 및 여건에 따름)
 - 역 할 : 센터 업무전반 총괄 권한 및 책임자, 정밀검진(임상평가) 시행
- ② 팀장(상근, 필수) : 1명
 - 자 격 : 간호사 국가면허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역 할 : 센터 업무전반 사무총괄
- ③ 팀원(상근, 필수)
 - 자 격 : 팀원1급 :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등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보건복지 분야 국가면허·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팀원2급 : 팀원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역 할 : 치매관리사업 실무담당,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 치매관련 전문자격 소유자나 교육과정 이수자, 치매나 노인보호 유경험자 우선 선발

나) 치매안심센터 구성 및 기능

[센터 기능 (예시)]



-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 인지기능저하자 대상 선별·진단검사 실시,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욕구과약, 치매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 경로 관리
-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3~6개월)를 위한 이용시설
 - * 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약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등 낮 시간 보호 제공
 - * 치매환자쉼터 표준 운영(안) : 정원 25명 내외, 전담인력 2~3명 배치
- 카페 : 치매어르신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치매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

5. 협의체 및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1)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가) 기 능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 기본방향 결정과 현안 논의, 운영실무 자문

나) 구 성 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다) 운영횟수 : 필요시

라) 위원선정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① 센터장(당연직)
- ② 관계공무원(당연직)

마) 역 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등

- 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③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이용자)의 환경 및 고충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2)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가) 기 능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센터 운영, 사업 대상자의 권익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실무 자문, 현안 논의

나) 구 성 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다) 운영횟수 : 필요시

라) 위원선정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① 센터장(당연직)
- ② 관계공무원(당연직)

마) 역 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등

- ①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③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나. 지역사회협의체

1)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협의체

가) 목 적

치매관리사업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 및 기관 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구 성 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자치구보건소장, 공립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노인회, 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보호전문기관, 생활체육회, 치매환자가족, 데이케어센터시설장, 치매학회·협회, 학계 관계자 등

다) 운영횟수 : 연 2회 이상(서면회의 1회 가능)

라) 위원선정 : 구성원 중에서 위촉함

마) 역 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평가 등

- 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
- ③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분야별 기술적 자문
- ④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중장기 대책에 대한 자문
-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2)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가) 기 능 :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

나) 구 성 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다) 운영횟수 : 연 2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라) 위원선정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① 보건소장(당연직)
- ② 센터장(당연직)
- ③ 공공부문 위원 :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 ④ 민간부문 위원 :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마) 역 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평가 등

- ①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③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
- ④ 치매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
-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다. 치매사례관리위원회

1) 기능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치매환자 선정,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 및 효과성 평가

2)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혹은 협력의사
- (위 원) 치매안심센터 팀장, 사례관리담당자 등

3) 횟수

월 2회 이상

(대상자에게 개입 혹은 중재,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경우 상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치매관리사업 업무 안내

II

- 01...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02...조기검진 사업
- 03...등록관리 사업
- 04...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 05...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06...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 07...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1.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가.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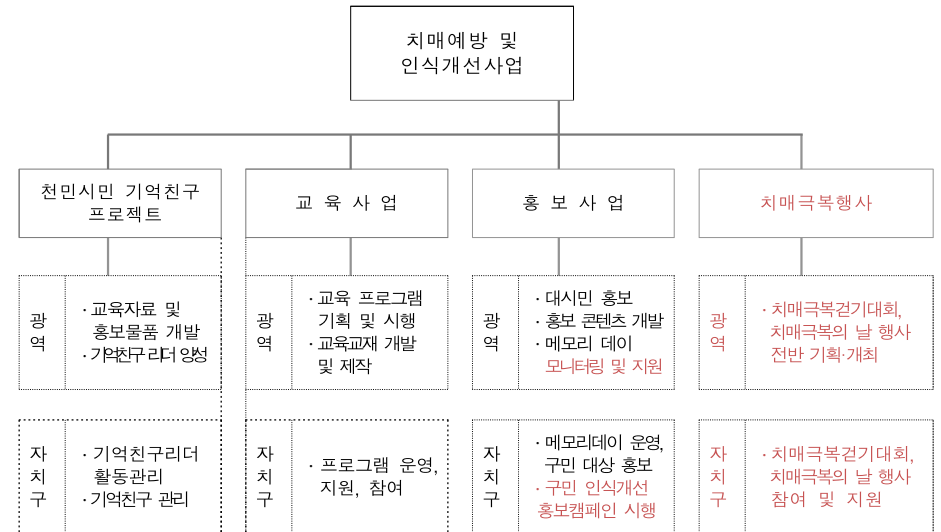
1) 목 적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치매도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 서울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 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다) 「치매극복의 날」, 「치매극복 걷기대회」 등 기념행사 개최
- 라) 시민(지역 구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 마) 사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 활동(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3) 추진 체계



나. 세부 내용

1) 천만시민 기억친구(치매파트너) 프로젝트

가) 사업 개요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고 누구나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치매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에서 환자나 가족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

나) 천만시민 기억친구(치매파트너) 및 기억친구리더(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① 대 상 :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시민
- ② 내 용 : 천만시민 기억친구(일반시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사업기획 및 총괄, 교육 자료 개발, 기억친구리더 모집 및 양성교육,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모니터링, 양성된 기억친구리더 자치구 연결, 기억친구 직접 양성(제한적 시행)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자치구 내 기억친구 모집 및 양성교육, 양성된 기억친구리더 활동관리
- ④ 추진방법
 - 기억친구리더 양성(광역) → 기억친구리더 연결 → 기억친구 양성(자치구)

다)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

- ① 대 상 : 양성된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 ② 내 용 : 양성된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관리, 프로젝트 홍보
-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전체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현황 및 활동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홍보, 기억친구리더 경진대회 개최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자치구 기억친구 및 자치구 활동 기억친구리더 관리
- ④ 추진방법
 - 온라인 홍보 : 기억친구 홈페이지 관리, 치매관리사업 새소식 및 기억친구 활동내용 소식 전달
 - 홍보물품 배포 : 기억친구 밴드(팔찌), 리플렛 배포, 기억친구리더 교육자료 제공
 - 기억친구 관리 : 기억친구 DB관리,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실적관리

2) 치매이해 및 치매예방 운동법 등 교육

- 가)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시민
- 나) 내용 : 치매의 이해, 치매예방 운동법 등
- 다) 추진주체

- ① 광역치매센터 :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자료 개발, 자원 모니터링 등
- ②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교육 운영 및 평가(교육 사진 및 대상자 명부 첨부 등)

라) 추진방법 : 대상에 따른 방문 및 내방 혹은 교육방법 선택(동영상 교육자료 배포 등)

3) 홍보 프로그램

가) 오프라인 홍보

- ① 권역별 메모리 데이 캠페인
 - 내 용 : 5권역 메모리 데이 행사 운영
 - 일 시 : 6, 10월 셋째 주 수요일 15:00~17:00(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메모리 데이 캠페인 모니터링 시행, 홍보물품 및 필요물품 지원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메모리 데이 캠페인 주관하여 진행
 - 추진방법 : 광역 콘텐츠 개발 → 일정 안내 → 계획서 제출(자치구) → 메모리 데이 운영 → 모니터링(광역) → 메모리 데이 실적 및 결과보고 제출(자치구) → 통합 결과보고 작성(광역) → 메모리 데이 결과 통보(광역)
- ② 캠페인 진행
 - 내 용 : 자치구 메모리 데이, 타 기관과 연합하여 홍보부스 운영 포함
 - 추진주체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캠페인 주관하여 진행
 - 추진방법 : 홍보물 배포와 함께 검진 1개 또는 체험활동 1개 이상 진행하는 것만 인정
 - 예) • 치매조기검진 1개, 팔찌 만들기 체험활동 1개, 홍보물 전달, • 팔찌 만들기 체험활동 2개, 홍보물 전달
 - 퍼즐 맞추기 체험활동 1개, 가두행진, 홍보물 전달
- ③ 외부기관 등 방문홍보
 - 내 용 : 외부 기관 방문하여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안내
 - 추진주체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방문홍보 주관하여 진행

- 추진방법 : 리플렛 전달, 포스터 부착 등

※ 교육목적으로 타 기관 방문하여 홍보물까지 전달했다고, 교육과 방문홍보 이증실적으로 DB 입력 안됨

나) 언론 홍보

- ① 내 용 : 언론매체를 통한 기관 홍보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언론홍보계획 수립, 평가 등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 언론홍보계획 수립, 언론홍보 진행
- ③ 추진방법
 -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및 사업소개 (언론동향 보고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에 제출)
 - 보도기사 배포를 통한 신문기사 게재
 - 잡지, 생활정보지 관련 기관의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
- ④ 기사사항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언론 홍보는 매체에 홍보 된 내용만 실적으로 인정 (직원 혹은 기관 홈페이지, SNS, 블로그, 1365 자원봉사 사이트, VMS 등의 사업내용 보고는 언론매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인터넷 홍보

- ① 내 용 : 인터넷을 통한 기관 홍보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인터넷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등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 인터넷 홍보 계획 수립, 인터넷홍보 진행
- ③ 추진방법
 - 기관 홈페이지 관리 : 게시물 관리(공지사항, 센터활동보고, 사진첩 게시물)
 - 타 사이트 연계를 통한 홍보 : 배너 혹은 사이트 주소 링크, 사업안내 에 복지관, 병원, 협회, 주민센터, 보건소 홈페이지 등
 - 기관 소셜 네트워크(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홍보 : 사업소식, 보도자료 링크 등

라) 옥외 홍보

- ① 내 용 : 설치물을 사용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여 진행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옥외홍보계획 수립, 평가 등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 옥외홍보계획 수립, 옥외홍보 진행

③ 추진방법

- 전광판 혹은 버스승강장을 활용하여 홍보
- 버스, 택시, 지하철 내 외부 대중교통 광고
- IPTV 줄 광고
- 배너, 포스터 홍보 등

마) 치매예방콘텐츠 확산(3.3.3)

- ① 내 용 :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운동법, ‘치매체크앱’ 등 콘텐츠 보급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기획한 콘텐츠 활용, 자체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 영상·유입물 등의 형태로 홍보물 기획·제작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배포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받은 치매예방 콘텐츠를 직접 서비스 형태로 대상자에게 배포 및 확산
- ③ 추진방법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게시, 방문자 대상 안내, 유관기관 소개, 외부홍보캠페인 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 치매체크 어플리케이션 활용교육 및 확산

바) 기타 홍보

- ① 내 용 : 언론매체활용, 인터넷, 옥외홍보 등을 제외한 다른 기타방법으로 홍보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기타방법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등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 기타방법 홍보계획 수립 및 진행
- ③ 추진방법
 - 소책자 발간
 - 기관안내 리플렛 및 달력제작 등 인쇄물 홍보
 - 홍보물품 제작

4) 치매 극복 행사

가)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 ① 목 적 : 치매가족의 치매극복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및 공유의 장 마련
- ② 대 상 :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 ③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중, 장소 추후 공지
- ④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의 날 총괄 기획, 행사 주관하여 시행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 치매환자 및 가족 행사참여유도 등
- ⑤ 추진방법
 - 치매관련 정보제공, 자치구별 업무유공자 표창, 세부행사(주제선정) 진행 등

나) 치매 극복수기 공모

- ① 목 적 :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사회적인 따뜻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치매극복수기와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이용 수기 공모
- ② 대 상 : 치매극복 경험이 있는 치매 환자나 그 가족
- ③ 일 정 : 6월~8월
- ④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수기 공모, 우수작품 선정 및 시상
- ⑤ 추진방법 : 6월~8월 접수→한국문인협회 심사 의뢰→9월 중 시상식 진행

다) 치매 극복주간 홍보 행사

- ① 목 적 :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와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함
- ② 대 상 : 서울 시민,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등
- ③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중, 장소 추후 공지
- ④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기획, 행사 주관하여 시행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참여, 세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필요시 행사 기획
- ⑤ 추진방법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콘텐츠 개발, 계획서 작성·제출 및 결과 보고, 치매극복행사 준비·시행 및 결과보고(행사관련 기획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업로드) 등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련 정보제공, 치매검진 및 상담 필수, 치매극복 프로그램 소개 등

라) 한미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 ① 목 적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
- ② 대 상 : 서울시 전체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등
- ③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4일 (토), 뚝섬유원지 ※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④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운영지침 작성 및 전달, 홍보 기획 및 실시, 사업평가
 - 광역치매센터 : 행사기획(일정·장소·내용 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코스 구성, 보험 가입 등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 부스 운영, 행사 참석자 모집 ※ 필요시 행사 기획
 - ※ 치매 극복 걷기대회를 광역치매센터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진행 가능하며, 중앙 치매센터에서 행사홍보 인쇄물 디자인 개발하고, 운영지침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실시(자원봉사자 모집 및 사전교육 등)
- ⑤ 추진방법
 - 등록 및 참가물품 배부→개회식 진행(개회사, 행사 개요 및 코스 안내 등)
 - 이벤트 및 준비체조 시행→코스 따라 걷기→폐회식→행사결과보고

5) 치매 인식도·만족도 조사

가) 대 상

- ① 치매 인식도 조사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②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만 19세 이상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 ※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조사 대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조사 내용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인식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다) 조사 도구 : 서식3-① 치매인식도 조사표, 서식 3-②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표를 참조하여 진행

라) 조사 방법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가 정한 시기에 설문조사 실시 후 DB입력

2. 조기검진 사업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가. 사업 개요

1) 목 적

지역사회 거주노인 전체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화 방지에 기여함

2) 근 거

가) 치매관리법 제11조

나)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대상자)

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 검진방법 등)

라)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약 10~15%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나) 완치가 어렵고 만성적이고 진행성의 경과를 보이는 치매의 경우에도, 최근 치료약물의 개발로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단계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다)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하거나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 자신과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라) 아울러 치매 고위험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내 지속적인 예방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경우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치매 발병을 2년 정도 지연 시키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을 약 30%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4) 사업 추진체계

가) 광역치매센터

조기검진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관리, 서울시 검진 통계 확보

나)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입력, 지역 검진 통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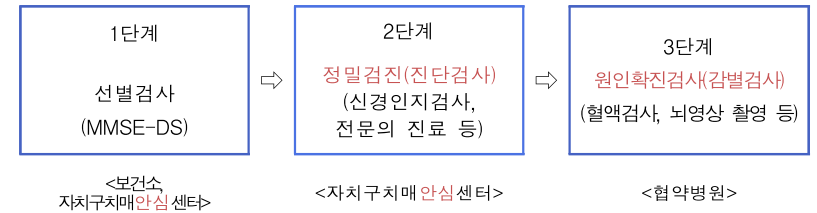
나. 사업 내용

1) 사업(검진) 대상자 : 지역사회 거주 만 60세 이상인 자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든 사업대상자 중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자,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저소득 주민 우선 검

2) 수행절차 및 방법



가) 선별검사

① 검진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② 검진 장소

- 내원검진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내원검진을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되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수

③ 검진 예약

- 센터 내소 또는 전화 예약
 - ‘치매선별검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②) 작성 및 활용하여 예약 관리
- 등록번호 부여 방법 : 부록 등록번호 부여체계 ‘자치구 부여번호’(표 11-⑤) 참고

④ 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조기검진 신청서(서식 1-③) 작성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서식 2-②)심층상담기록) 작성

- 치매선별검사지 MMSE-DS(서식 1-④, 표 2-1 진단검사의뢰점수, 표 2-2 채점점수)
 ※ 2018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운영 근거(보건복지부)

⑤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MMSE 점수에 대한 정상 노인 기준 값을 기준으로 결과 해석(표2-1)

* MMSE 점수 < 평균 - 1.5 표준편차 : '인지저하' 로 분류
 ⇒ 정밀검진 의뢰

* MMSE 점수 ≥ 평균 - 1.5 표준편차 : '정상' 으로 분류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2년마다 선별검진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예방 프로그램 연계)

- 선별검진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서식 1-⑤)의 선별검진 부분 작성

⑥ 검진 결과 통보

* '인지저하' 로 분류된 경우 : '치매선별검진 결과 보고(인지저하)'
 (서식 1-⑦) 양식 활용하되, 전화 또는 직접 설명을 통해 결과 통보

* '정상' 으로 분류된 경우 : '치매선별검진 결과 보고(정상)'
 (서식 1-⑥) 양식 활용하여 대면 또는 전화로 검진 결과 통보

나) 정밀검진

- ① 검진 대상자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고위험군 정기검진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② 검진 장소

- 내원검진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내원검진을 원치,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되 방문검진 시 주변의 방해가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수

③ 검진 예약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정밀 1단계 및 2단계 동시 예약
- '치매정밀검진 1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⑧), '치매정밀검진 2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⑨) 작성 및 활용

④ 검진 방법

- 1단계 : 치매신경심리평가 < CERAD-K(N) 또는 SNSB 도구 사용>
 - 시행자 :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시행
- 2단계 : 치매 임상평가
 - 시행자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
 - 임상평가 시행 후 다음 항목에 대한 결과 도출

※ 진단 분류군 : ㉞ 치매 ㉟ 치매 고위험 ㊱ 정상

㉞ 치매 : DSM-5 치매 기준에 근거

㉟ 치매 고위험 :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전문의 진찰결과 치매 진행 예방 또는 인지기능저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퇴행성 뇌질환 초기, 혈관성 인지손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능저하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도인지 장애 (MCI : Mild Cognitive Impairment)

㊱ 정상 : 상기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 (경미한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됨)

※ Clinical Dementia Rating (CDR(서식 1-⑩)) 전체 및 영역별 점수

㉞ 치매 : 전체점수 0.5~5

㉟ 치매 고위험 : 0.5

㊱ 정상 : 0

※ 정밀 검진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서식 1-⑤)의 정밀검진 부분 작성

⑤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 로 진단 분류된 경우
 ⇒ 치매 원인확인 검사 연계 ⇒ 원인확인 후 예방등록 관리사업 연계 · 등록 ⇒ 지속관리
- '치매 고위험(경도인지장애)' 으로 진단 분류된 경우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연 1회 정밀검진 실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예방 프로그램 연계 및 정보 제공)

-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1~2년마다 선별검진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예방 프로그램 연계)

⑥ 검진 결과 통보

- 최종적인 검진 결과를 2단계를 시행한 의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함
(정밀 검진 1단계 및 2단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대면 또는 전화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설명함

다) 치매 원인확진검사(감별검사) 연계

① 대상자 : 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 분류된 자

(정밀검진 대상자의 약 20~25% 추계)

②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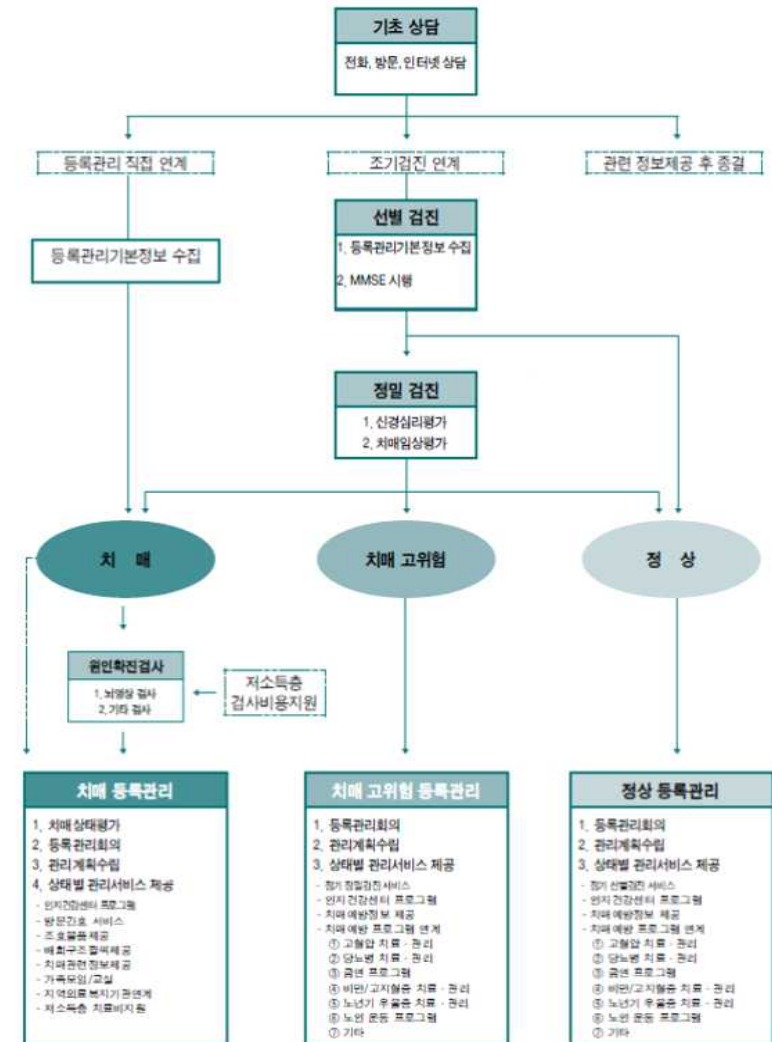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수탁병원(또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연계를 통한 뇌 영상 검사 및 기타 진단 의학적 검사 시행
-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치매 원인 확인
- 치매 원인확진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서식 1-⑥) 치매 원인확진 부분 작성

③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시행

④ 검진자료 관리

- 자료 보관
 - 개인별로 작성된 서식들은 개인별 ‘치매등록관리 기록부 표지’(서식 1-⑪)에 첩하여 보관
(예방등록 관리사업 참고)
 - 각 단계 별 ‘검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②, 서식 1-⑧, 서식 1-⑨) 기록 보관
- DB 입력 : ‘치매 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 해당 부분 입력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흐름도]



3. 등록관리 사업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가. 사업 개요

1) 목 적

- 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관련 건강상태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삶의 질 증진
- 나) 정상 또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발생을 감소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노인 자신과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 부담을 줄임
- 다) 치매로 발견된 노인에게는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며, 치매의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로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켜 시설입소를 지연시킴

2) 근 거

- 가) 치매관리법 제3조 1항
- 나) 치매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가) 치매는 만성적이고 진행성 경과를 보이는 뇌 정신 질환이며, 진행 단계에 따라 적합한 조호의 유형이나 관련 시설이 다름
- 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케어의 핵심이 되면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그룹 홈, 치매 클리닉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가정 중심 케어’가 효과적이며,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의 경우 치매전문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 중심 케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따라서 치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케어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개별화된 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치매 서비스 망(Dementia Service Network : DSN)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자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음
- 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이고도 연속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등록 관리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

4) 주요내용

- 가) 치매·고위험·정상군별 등록관리
- 나)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다)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 DB 입력 및 통계 자료 확보

나.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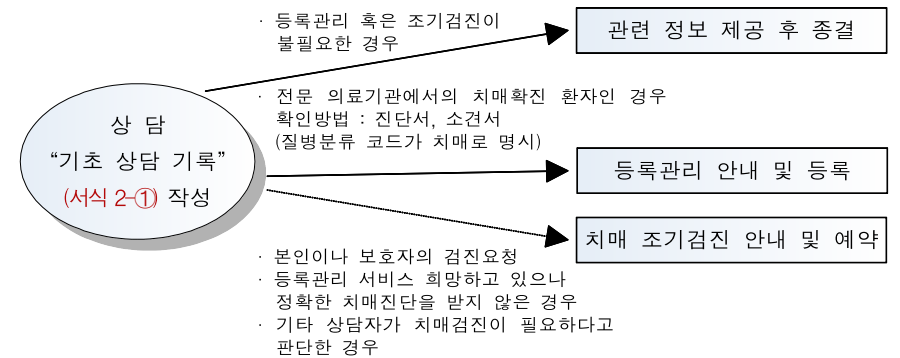
1) 기초 상담

가) 개 요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에 접촉한 모든 시민(또는 관련보호자)을 일차적으로 상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치매조기검진 또는 본격적 등록 관리로 연계하는 절차

나) 세부내용

- ① 장 소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②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 ③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 노인(만 60세 미만 치매환자도 이용 가능)
- ④ 방 법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
- ⑤ 상담 절차



※ 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매 조기검진 연계

2) 등록 관리(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사례 관리’ 에 해당함)

가) 개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중 한가지로 판정을 받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대상자별 적정관리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

-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안내 기준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에는 조기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도인지장애 외에도 7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진입자가 포함됨
-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안내에서는 등록관리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례관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일관성 및 기존에 사용해오던 사례관리와의 혼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등록관리’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기존 사례관리는 맞춤형사례관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사례관리(서울시의 등록관리)와 혼돈을 피하고자 하였음

나) 등록 평가 및 서식 작성

① 시 행 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② 시행 절차

-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서식 2-②심층상담기록) 작성
(조기검진 사업에서 기 작성한 경우는 작성된 서식 그대로 사용)
-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서식 2-③) 작성
-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별 ‘치매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⑪)에 철하여 보관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다) 등록 관리 계획 수립

① ‘등록관리 회의’에서 대상자 개인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정 및 세부관리 계획 수립

- 대상자의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관리계획 수정
 - ※ 등록관리 회의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팀장, 등록평가 시행자, 기타 센터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개인별 문제 사정 및 관리계획 수립
(회의 주기 및 시간은 등록 대상자 수에 따라 조정)

② 작성서식

- 치매 : ‘**치매 등록관리 계획지**’(서식 2-④) 작성
- 치매 고위험 :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계획지**’(서식 2-⑤) 작성
- 정상 : ‘**정상 등록관리 계획지**’(서식 2-⑥) 작성

라) 치매, 고위험, 정상 등록관리

① 치매 등록관리

• 방문 간호 서비스

- 목 적 :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가 치매환자 상태와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① 중등도, 중증 재가 치매 환자 또는 신체적 합병증에 대한 지속적인 간호 관리가 필요한 치매 환자
- ② 신체적 제한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및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 ③ 재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경우

- 시 행 자 : 간호사

- 서비스 내용

- 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제공
- ②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능훈련방법 지도
- ③ 욕창 등 신체적 손상에 대한 처치, 투약중 환자 투약관리
- ④ 가족 상담을 통한 문제 파악과 정서적 지지
- ⑤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이용방법 및 서비스 안내

- 지침물품 : 혈압계, 혈당측정기, 구급약품, 휴대폰, 건강사정도구, 응급상황 시 비상 연락처 등을 기본적으로 지참

- 수행방법

- ① 간호 대상 문제 심각성 및 재가 보호자의 취약성에 따라 정기 방문주기 결정
- ② 방문기록은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주호소 및 간호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간호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하고, 다음 방문 시 수행 결과를 평가
- ③ 부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등록관리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 ④ 필요시 의료기관 등 자원연계

- 작성서식

- ① ‘방문간호 계획표’(서식 2-⑦)
- ② ‘방문간호 기록지’(서식 2-⑧) * 환자 상태 관찰, 주호소 및 간호문제 중심으로 기록

• **치매 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가족교실 운영)**

- 목 적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 향상
- 대 상 : 치매환자 가족(치매환자의 가족은 환자 및 가족 본인의 거주지 모두에서 동반 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외한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는 치매환자가 등록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 가능)
- 추진체계
 - ① 광역치매센터 : 광역 내 가족교실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가족교실 운영자 교육
 - ② 치매안심센터 : 가족교실 운영, 가족교실 참여자 관리
- 공통 작성 내용 : 돌봄부담분석 평가
 - (희망다이어리, 기타 가족교육 및 지지프로그램 운영 시 공통 적용)
 - : 치매환자 가족상담을 통해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부담 경감에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 ① 돌봄부담분석을 진행하기 전 돌봄부담분석 이용 신청서(서식 2-⑮) 및 개인 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⑭) 작성
 - ② 돌봄부담 및 부담요인 평가 설문지 한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서식 2-⑯PHQ-9),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서식2-⑰S-ZBI),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서식2-⑱NPI-Q), 치매태도척도(2-⑲DAS)작성
 - ③ 돌봄부담 분석 시 PHQ-9의 점수가 5점 이상이거나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6개월 단위로 추적관리
 - ④ PHQ-9 10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 또는 문제행동(심한 기분변화, 공격적인 행동, 환청/망상 증상, 음주, 자살/자해 계획 또는 시도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지역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상담의뢰서를 작성하여 연계
 - ⑤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연계 시 대상자로부터(타기관용)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⑭)를 받아야 함

A.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지지프로그램 ‘희망다이어리’ 운영

- 목 적 : 치매환자 가족들 간의 정기 모임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상호 간 경험의

공유 및 상호 지지의 기회를 가지고, 치매에 대한 정보나 조호 관련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환자 조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돕고자 함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①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치매 가족들에게 인지 재구조화, 점진적 근육이완 요법, 운동요법, 사회적 지지 등으로 구성
 - ② 치매 관련 전문 지식 교육 및 상담
 - ③ 치매환자의 안전 관리 및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
- 운영 방법
 - ① 5명 이상 인원의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실정에 맞게 운영
 - ② ‘희망다이어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기(10회기) 내용 준수하여 진행
 - ③ ‘희망다이어리’ 운영 후 자조모임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 ④ 가족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⑳),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㉑) 작성
 - ⑤ 가족교실 수강을 위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2-㉒)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㉓) 작성
 - ⑥ 8회기 : 가족교실 만족도 평가(서식 2-㉔)

B. 치매가족을 위한 ‘e-희망교실’ 운영(온라인)

- 목 적 :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고, 반복학습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지지하고자 함
- 대 상 : 치매 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① 치매 환자 안전, 정신행동증상, 기억력 저하에 대응하는 방법
 - ② 치매 환자 돌봄 기술 및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도움 정보 등
- 운영 방법
 - ① 온라인 1:1 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
 - ③ 방문간호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교육 콘텐츠 활용
- 기타 활용 : 시민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와 치매관련 기관 실무자 교육 콘텐츠로 활용

C. 방문형 치매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희망메신저’ 운영

- 목 적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치매환자 돌봄 경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방문을 통해 제공하여 가족의 미충족 요구 및 우울감,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함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중재로 질병 교육, 안전, 가족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녕, 사회적 지지와 치매환자의 행동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영역에 대한 심리교육 및 대처기술 훈련으로 구성
 - ㉡ 희망노트북, 행동처방, 가족건강증진 구조화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중재
- 운영 방법
 - ㉠ 중재자와 대상자 1:1로 진행되는 개별 프로그램
 - ㉡ 정해진 주제에 따라 주 1회 총 12주간 실시되며 직접 방문 9회, 전화 상담 3회로 구성(매회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
 - ㉢ 사전평가(기초조사 및 위험평가 : 가족 위험평가, 치매환자 위험평가, 외양평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가정환경 평가)→중재 1단계(기초조사 및 위험평가결과를 가족과 함께 검토하고 중재 목표 및 계획세우기, 치매정보 및 희망노트북 제공 등)→중재 2단계(안전 및 신체적 건강 영역 중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족 지지모임 참여 독려 등)→중재 3단계(가족의 건강증진 영역 중재, 목표 행동 처방 중재 등) → 사후평가 → 종결

D. ‘희망다이어리’ 외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헤어림 등) 운영

- 목 적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가족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 향상
- 대 상 : 치매 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 치매알기(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신행동증상, 치매종류별 초기 증상,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 ㉡ 돌보는 지혜(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응용, 치매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찾기, 치매환자

가족의 자기돌보기)

- 운영 방법

- ㉠ 헤어림, 휴식공간, 치매가족협회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
- ㉡ 가족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 작성
- ㉢ 가족교실 수강을 위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2-㉢)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 작성
- ㉣ 8회기 : 가족교실 만족도 평가(서식 2-㉤)
- ㉤ 헤어림 운영시 회기별 : 가족 일지(서식 2-㉥), 회기별 모임 만족도(서식 2-㉦) 작성

E.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 목 적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원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가족교실 수료자 혹은 교육은 신청하지 않았으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
- 지원 내용
 - ㉠ 자조모임 개설 및 참여자 등록, 운영지원
 - ㉡ 치매상담콜센터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 지정, 자조모임 지원 치매파트너 등록
 - ㉢ 온라인 자조모임 등록
- 자조모임 관리
 - ㉠ 자조모임 리더 관리를 통한 자조모임 관리
 - ㉡ 자조모임 일지를 통한 자조모임 관리
 - ㉢ 모니터링 실시(실무자 간담회,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운영관리, 운영자 교육 등)
 - ㉣ 자조모임 이용 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 작성

F. 치매가족 카페 운영

- 목 적 :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며 다른 치매환자 및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치매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치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올바른 지식

함양 도모

- 대 상 : 관내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구성원, 관내 65세 이상 노인 거주자
- 주요 내용
 - ㉠ 치매관련 도서 및 리플릿,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구 등을 비치하여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다과 및 음료 제공
 - ㉡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시행 : 힐링프로그램 이용자는 힐링프로그램 이용 신청서(서식 2-㉒)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㉓), 운영일지(서식 2-㉔) 작성
- 운영 방법
 - ㉠ 가족카페 프로그램 일정 고지
 - ㉡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힐링프로그램 진행
 - ㉢ 비치물품 및 다과 운영 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목 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가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치매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다음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시 행 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필요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조력)

- 사례관리 절차

| 단 계 | 내 용 |
|------------------------|---|
| 1단계 : 사례관리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신청 ● 맞춤형사례관리 신청서 및 동의서 확보 ● 대상자 선정 기준 부합 여부 심사 ● 대상자 확정 |
| 2단계 : 초기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평가서 작성 ● 대상자 욕구 및 문제 사정 |
| 3단계 : 실행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 필요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사례회의의 진행 |
| 4단계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맞춤형사례관리 지도 및 감독(슈퍼비전) |
| 5단계 : 단계평가(1/2/3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달성 여부에 대한 단계평가(1/2/3차) ●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 조절 |
| 6단계 : 1차 종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달성도 평가 ● 1차 종결 및 맞춤형사례관리 연장 여부 심사 ● 1차 종결 또는 맞춤형사례관리 연장 확정 ● 만족도 조사 |
| 7단계 : 사후관리 및 추적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종결 이후 안정화 여부 점검(사후관리) ● 사후관리에 대한 추적평가 ● 재개입 필요성 여부 판단 |
| 8단계 : 최종 종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를 위한 대상자와 담당자간의 모든 협력활동 종료 |

- 추진주체

- ㉠ 광역치매센터 : 교육, 지침 전달, 사업평가
-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맞춤형 사례관리 시행

-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 DB 입력 및 관리

- ㉠ ANSYS DB입력 (2018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서식 준용)
- ㉡ DB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평가 진행

※ 기타 세부지침은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준용

• **조호 물품 제공 서비스**

- 목 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대 상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대상자 심의 적용 시점은 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에게 조호물품 제공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조호물품 종류
 - ① 위생소모품 :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에 한함
 - ② 조호기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유도)
- 제공방법
 - ① 위생소모품 :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② 조호기구
 - 대여기간 :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서 연장 가능
 - ※ 재가 치매환자에 한하여 무상공급 원칙
- 내 용
 - ①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평가를 통해 파악된 환자 상태와 문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케어 물품의 종류와 수량 결정
 - ② 위생소모품 공급 시 개인별 '위생소모품 지원신청서'(서식 2-⑨), 위생소모품 제공대장(서식 2-⑩) 작성, 환자 성명,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가 직접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함
 - ③ 조호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서식 2-⑪) 및 '조호기구 대여 대장'(서식 2-⑫)을 작성하도록 함
 - ④ 신청서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뒤 보호자의 서명 확인 및 기기사용법과 기사용한 대여물품은 깨끗이 정리·정돈 후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도록 보호자에게 교육
 - ⑤ 신청서는 환자 '치매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⑪)에 철하여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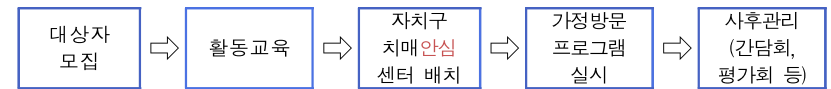
•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배부 사업**

- 목 적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는 수단인 인식표를 무상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배회 증상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배회에 대비
- 대 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와 60세 이상 어르신의 보호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 배부기간 : 연중

- 배부기관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비 용 : 무료 (※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제작)
- 인식표 배부방법
 - 발급희망자가 치매안심센터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 2-⑬),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⑭)를 작성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정보 등록 시 즉시 인식표 일련번호 부여 됨
 - ⇒ 광역치매센터(인식표 제작의뢰)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인식표 수령 및 배포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보호자 확인절차 진행(후견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에서 확인), 기 제출서류 있을시 추가 제출 안함
※ 세부내용은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인식표 배부사업 준용

• **재가 치매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가가호호 기억친구」**

- 목 적 : 건강한 노인에게는 치매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 및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치매 노인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기억증진활동을 도와주기 위함
- 대 상 : 재가 치매노인
- 목 표 : 「가가호호 기억친구」 150명 발굴(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 운영체계→2인 1개조, 월 30시간(주 2~3회, 1일 3시간) 활동
- 추진주체
 - ① 광역치매센터 : 사업 기획 및 총괄, 대상자 교육, 모니터링 등
 - ②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모집 및 관리,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내용 : 소양교육 및 활동교육, 가정방문 및 정서지지 요령 등
- 추진 흐름도



※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 **치매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 목 적 : 치매관련 정보를 인쇄물(소책자, 리플렛) 제공, 홈페이지, 가족모임 및 교실·강연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제공하여 치매 환자가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 및 조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 상 : 치매 환자 및 가족

- 정보 제공 범위

- ④ 의료 서비스 정보 : 외래진료, 입원치료, 방문간호, 인지재활, 치매예방 프로그램
- ⑤ 복지 서비스 정보 : 간병보조, 가사보조,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 보호, 간병용품, 목욕 서비스, 환자 이송 서비스, 주택 개조 서비스, 가족모임, 가족교육, 재정지원 등의 서비스
- ⑥ 의학 정보 : 질병(치매)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후, 유전, 예방 등과 관련정보
- ⑦ 조호기술 정보 : 일상생활 동작(식사, 의복착용, 이동, 배설 등) 조호, 문제행동(난폭 행동, 수면장애, 배회, 의심, 환각, 수면 장애, 기이한 행동 등) 관리, 신체증상(욕창, 전도, 경직, 발열) 관리, 작업요법 등에 관한 정보

• 치매관련 지역자원 연계

- 목 적 : 등록관리 치매환자들이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자체 제공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또는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복지기관,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의뢰하고, 의뢰 대상 기관과 상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받기 위한

- 주요내용

- ① 다양한 치매 관련 민간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한 민간 자원 유입의 활성화
- ② 시설 및 기관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가족 및 시설 종사자에게 적절한 의료 정보와 복지 자원을 제공
- ③ 시설 및 기관을 활용하여 케어 관련 인력에 대한 케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실시
- ④ 가정과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케어 기술이나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 ⑤ 다양한 치매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관리

- 연계 방법

① 의료기관 연계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수탁병원, 기타 관련 병의원, 보건소 등으로 의뢰하여 원인 확진검사, 동반질환 치료, 장기요양병원 입원 진료 등 연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상태에 따른 등록 관리 서비스 실시

② 복지기관 연계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노인복지관련 기관 등으로 연결하여 적정 서비스 이용하도록 연계
- 관련 복지기관에 이용하거나 관리대상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상태에 따른 등록 관리 서비스 실시

· 시설 및 기관을 활용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실시

- ③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 지역 자활후견기관, 지역노인회, 경찰서, 소방서, 새마을부녀회, 여성교실, 복지센터 등

•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 인지건강센터 운영 참고

②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 고위험군 : 정밀검진 상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 정기 정밀검진

- 목 적 : 치매 고위험 관리를 통해 치매로의 이행을 억제하고, 치매 이행시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자 함
- 대 상 : 치매 고위험 노인
- 방 법 : 1년에 1회 시행 원칙, 대상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 목 적 : 치매 고위험 노인 또는 그 가족이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예방 관련 정보를 직접 설명, 인쇄물(소책자, 리플렛 등) 제공, 홈페이지 안내,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대 상 : 치매 고위험 노인

- 주요내용

- ① 일반적 치매 예방 관련 지식 정보
- ② 대상 노인 개인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
(기 작성된 '심층상담'(서식 2-②) 내용 참고)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 목 적 : 치매 고위험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 대 상 :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연계
- 연계종류 : 당뇨병 고혈압 치료·관리, 금연, 대사관리, 노년기 우울증 치료·관리, 노인 운동(또는 체조) 등 프로그램 등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 치매예방관련 프로그램 제공

- 목 적 : 치매 고위험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자체 인지건강센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 대 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으로 판단된 대상자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 ※ 기타 비약물 분야 (원예, 음악, 미술 등)치료사의 경우 보조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종류
 - ①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예방교실 프로그램
 - ② 비만, 고지혈증 환자대상 예방교실 프로그램
 - ③ 우울증 예방교실 프로그램, 노인 운동 (또는 체조) 프로그램 등
- 시행 방법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기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시행

●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 목 적 :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치매 고위험군을 전문가가 상담하고, 동시에 자원개발과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고위험군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 (필요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조력)
- 맞춤형 사례관리 절차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와 동일함

● 재가 치매 고위험 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가가호호 기억친구’(서울시 특화사업)

※ 치매 환자군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조

● 인지강화 교실

※ 인지건강센터 운영 참고

③ 정상 등록관리

● 정기 선별검진

- 목 적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선별 검진’ 단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치매 이행 시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리
- 대 상 : 정상 노인, 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 75세 진입자
- 방 법 : 2년에 1회 검진 원칙, 대상자 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 목 적 : 정상 노인이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예방 관련 정보를 직접 설명, 인쇄물(소책자, 리플렛 등) 제공, 홈페이지 안내, 강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정보 제공 범위
 - ① 일반적 치매 예방 관련 지식 정보
 - ② 대상 노인 개인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 (기 작성된 ‘심층상담’(서식 2-②)내용 참고)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치매 고위험 노인에 대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조

● 치매예방 교실

※ 인지건강센터 운영 참고

④ 등록관리 정보 보관

- 작성 서식 보관 : 개인별로 ‘치매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⑪)에 철하여 보관
- DB 입력 : ‘치매 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 해당 부분 입력

마) 인지건강센터 운영

① 개 요

- 목 적 : 치매 예방, 치매 악화 방지,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약물적 활동프로그램을 시행,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함
- 기능 및 역할
 - 기 능 : 비약물적 활동 프로그램 시행 및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부설의 기능적 단위
 - 역 할
 - ① 정상 노인 대상으로 치매 예방·기억증진 활동 프로그램(치매예방 교실) 시행
 - ② 치매 고위험 노인에 대한 치매 예방·기억증진 활동 프로그램(인지강화 교실) 시행
 - ③ 경도·중등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인지재활 및 인지 자극 프로그램) 시행

④ 지역 내 유관 시설 종사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교육 지원

※ 센터장 승인 하에 지원

● 운영 원칙

- 비약물적 활동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훈련된 센터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 ※ 연간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단순 주간보호기능을 지양하고, 외래 방문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 적용
- 주간보호시설, 경로당, 노인대학 등 지역 내 타 노인관련 시설들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 운영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30~17: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운영 방법

- 프로그램별 시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상황에 맞게 시행
- 인지건강센터 운영 담당자에게(예: 작업치료사,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등) 프로그램 운영
 - ※ 외부강사 초청 강의는 가급적 제한, 필요한 경우는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 결정하여 시행
- 개인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기 제한(1인당 연 72회 이내)
 - 예) 기본과정 48회(주 4회일 경우 3개월, 주 3회 4개월), 추가 과정 24회(주 1회 6개월)
- 개인 치료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집단 치료프로그램이나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하거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함
- 다만, 환자의 상태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제공 횟수 조정 가능

② 대상별 세부 운영내용

● 치매 환자

- 목 적 : 경도(또는 중등도) 치매환자의 인지재활 및 악화방지,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부설 인지건강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도(또는 중등도) 치매 환자
- 시행자 : 작업치료사 및 기타 비약물적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 등
- 프로그램 종류(인지재활 프로그램, 인지자극 프로그램)

③ 치료 형태 : 개인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가정 방문 프로그램

⑥ 치료 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안정치료, 기타 비약물적 치료 등

작업 치료

- 정 의 :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
- 프로그램 종류 : 컴퓨터 인지재활, 회상치료, 신체기능 증진활동, 기억력 및 현실인식 훈련

원예 치료

- 정 의 : 식물을 통한 원예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회복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
- 프로그램 종류 : 모종심기, 누름꽃 공예, 수경식물 재배 등

음악 치료

- 정 의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작사 활동을 통해 언어능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 우울을 감소시켜 사회적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치료
- 프로그램 종류 : 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창작 가사 쓰기 등

미술 치료

- 정 의 :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공간지각 및 감퇴된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인 치료
- 프로그램 종류 : 종이접기, 점토공예, 수채화 그리기 등

심리안정치료(스노즐렌)

- 정 의 : 오감을 통해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이 드는 조명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은은한 향기를 맡고, 맛보고 만져보며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경험을 제공 받음으로써 치매의 정신행동증상불안 초조 배회 등의 감소 및 이완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와 휴식의 효과
- 프로그램 종류 : 다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감각) 자극 및 이완

운동 치료

- 정 의 :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근력과 균형능력 향상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낙상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
- 프로그램 종류 : 실버요가, 단전호흡 및 치유운동

• 치매 고위험군

- 목 적 : 치매 고위험 노인의 치매 이행 예방, 인지기능 향상, 정서안정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대 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치매 고위험군
- 시행자 : 작업치료사 및 기타 비약물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
- 프로그램 종류 및 시행방법
 - ① 치료 형태 :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 ② 치료 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 비약물적 치료
 - ③ 시행 방법 : 프로그램별 시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실정에 맞게 시행
 - ④ 작성 서류 : 인지강화 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⑧),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1-⑭), 6개월 이상 계속 이용 시 인지강화 교실 연장신청서(서식 2-③), 인지강화 교실 참여자 사전·사후 평가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시행 MMSE-DS, GDS, SMC), 프로그램 운영일지(서식 2-③)

※ 기 제출서류 있을시 추가 제출 안함, 세부내용은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준용

• 정상군

- 목 적 : 선별검진 상 정상으로 판정 받은 노인의 치매 이행 예방, 인지기능 향상, 정서안정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치매예방 교실) 제공
- 대 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정상군
- 시행자 : 작업치료사 및 기타 비약물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
- 프로그램 종류 및 시행방법
 - ① 치료 형태 :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 ② 치료 종류 : 작업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 비약물적 치료
 - ③ 시행 방법 : 프로그램별 시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실정에 맞게 시행
 - ④ 작성 서류 : 치매예방 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②),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⑧),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서식 2-⑭), 6개월 이상 계속 이용 시 치매예방 교실 연장신청서(서식 2-③), 치매예방 교실 참여자 사전·사후 평가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시행 MMSE-DS, GDS, SMC), 프로그램 운영일지(서식 2-③)

※ 기 제출서류 있을시 추가 제출 안함, 세부내용은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준용

바) 「기억키움학교」

※ 서울시 「기억키움학교」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의 「치매환자쉼터」에 해당함

① 목 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지원 서비스 신청 대기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② 근거

- 치매관리법 제 17조 4항(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 치매관리법 제 17조 6항(그 밖에 시장·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및 평가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억키움학교 대상자 선정 및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DB 등록관리 등

③ 사업운영 개요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 또는 미신청자 등
 - ※ 인지지원 등급자 포함
- 재 원 :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재원 투입
- 운영방법
 - 대상자 모집 :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이용자 상태 사정, 이용 정원은 최대인원 20명
 - 운영방식 : 주 5일, 오전과 오후 각 3시간 이상,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독립된 공간 마련 : 원활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 수를 선정하고, 별도 공간 확보
- 대상자 선정절차
 - ①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상담 통해 신청, 치매환자 건강상태 사정 및 면담, 보호자유 및 구비서류 검토(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서 서식 2-④,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2-⑧, 개인정보 조화·처리·제공 동의서 서식 2-⑭), 선정심사 등

- ⑥ 재신청시 해당 센터의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1주내 결정(소득 및 주거,복지상황 취약여부 등 고려), 종료일 최소 2주전 치매환자쉼터 연장 신청서(서식 2-⑤) 제출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시 소득기준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평가 : 최초 이용 전과 이용 후(6개월) 치매환자 기능상태 평가(MMSE-DS, GDS, CDR 등의 도구 이용), 만족도 조사 시행
- ※ 기타 세부지침은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환자쉼터 운영 및 기억키움학교 운영지침(운영 매뉴얼) 참조

4. 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가. 사업 개요

1) 목 적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근 거

- 가)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나)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 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치매검진 방법 등)
- 라)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3)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가) 치매 문제로 인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조호비용은 향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가정이 독립적으로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간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환자의 증증화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 발생함
- 나)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조기치료의 지연을 예방하여 중증 치매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따라서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추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나. 사업 내용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 사업 개요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나)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 기준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질병’(표 11-⑦)의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Anticholinesterase)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NMDA receptor antagonist)를 성분으로하는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의 약 또는 항혈소판 제제 등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⑨)의 약을 복용하는 자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 소득기준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 중위소득 120% | 2,007 | 3,417 | 4,420 | 5,423 | 6,426 |

-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 ※ '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 재(경증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또한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후 지원유지

다) 대상자 선정 방법

① 선정 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 (통계청<kostat.go.kr> → (최상단)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 확인
※ 약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⑨)으로 확인되며, 약품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드러인포(www.druginfo.co.kr)’ 통합검색 활용을 통해 ‘성분명’을 재확인하여 활용하도록 함

- 소득기준

- ①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18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위 : 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
| 직장가입자 | 63,395 (68,074) | 106,682 (114,555) | 147,490 (158,375) | 171,063 (183,687) | 202,519 (217,465) | 234,986 (252,328) | 268,167 (287,958) | 306,683 (329,316) | 352,610 (378,633) |
| 지역가입자 | 45,733 (49,108) | 117,211 (125,861) | 167,711 (180,088) | 192,273 (206,463) | 225,054 (241,663) | 260,122 (279,319) | 291,169 (312,657) | 326,539 (350,638) | 363,427 (390,248) |

-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동 가구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험가입자 외 함께 동거하는 다른 보험가입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은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처리
-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치매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 본인납부금은 납부액(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임
-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의 변동이 잦은 경우(예 : 직업군인 등)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 휴직자의 경우 : 휴직 직전 산정된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판정
(예시) '15년 3월에 휴직하여 '15년 2월에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가장 최근자료일 경우, '1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를 확인(해당연도 지침)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② 대상자 선정 제외 :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구 사회복지과 등에 확인

-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처리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확인원'을 통해 신분확인)
 - 부적격 대상으로 선정 후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되었다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 ③ 선정 방법중복 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의 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정산, 단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기의 사업 수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정산

라) 대상자 선정기간 및 통보

- ①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 통보 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미선정 결과 통보서' (서식 1-⑰, 서식1-⑱)로 하되,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e-메일 등 이용 가능
- ② 단, 신청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마) 대상자 지원 자격 관리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 ① '17년도 12월 이전에 선정된 대상자로 '18년도에 연속해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속 지원
 - 단, '17년도 3월 이전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8년 1월 이후 새롭게 산정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 처리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각 보건소별 예탁금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탁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 ② 대상자 전출입 관련, 각 보건소에는 매월 5일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치매대상자관리»치매대상자조회)에서 전입자를 파악하여 전출지 보건소에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 사본 송부 요청
 - 전입지 보건소는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전입대상자를 계속 지원하며, 지원자격 확인은 **전입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전출지 보건소는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를 전입지 보건소에 송부
 - 단, 전출지 보건소에서 소득기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 심사 가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각 보건소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 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 ③ 사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전산으로 퇴록 처리, 보건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명단에서 퇴록 처리함
- ④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거소 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현황이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확인되면 지원 가능
- ⑤ 배정된 예산보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10% 이내로 대기자 명단 작성 및 관리
- 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를 2월 28일부로 정리하고, 3월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함

바) 지원 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약제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 ① 약제비용의 경우 동 처방약에 주성분이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인 치매 치료약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가 1개 이상 포함되거나,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 받고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⑨)의 약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②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특진료 등)을 제외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사) 지원 수준

- ①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예) 3개월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 상한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②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국비지원 예산액은 동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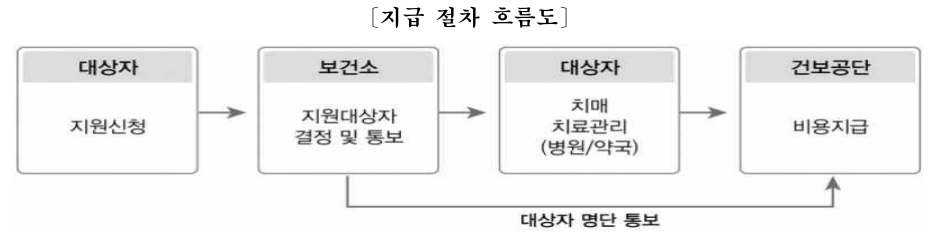
아) 지원 절차

① 대상자 신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서식 1-⑩, 인터넷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급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근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1-⑮)를 대상자로부터 받을 것

②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 '16년도 1월 청구분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시점은 3월 말이며, 이후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지급 예정
 - ※ 선정 대상자는 신청서 외 별도 청구 절차 불필요
 - 지급 대상자 명단은 보건소에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관리
- 보건소에서의 수기 지급
 - 대상자가 미지급된 '12년도 이전 치매치료관리비 영수증을 갖고 오거나, 병원·약국 에서 '12년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한 경우 보건소에서 수기지급
 - ※ 단, 해당연도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준용

2)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가) 사업 개요

치매 원인확진검사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① 동 사업 신청대상자 중 해당 지역주민으로 다음의 ㉠또는 ㉡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 ㉠ 다음의 ㄱ~ㄷ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ㄱ. 만 60세 이상인 자
 - ㄴ.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
 - ㄷ.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인 자(지원 기준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18년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위 : 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
| 직장가입자 | 63,395 (68,074) | 106,682 (114,555) | 147,490 (158,375) | 171,063 (183,687) | 202,519 (217,465) | 234,986 (252,328) | 268,167 (287,958) | 306,683 (329,316) | 352,610 (378,633) |
| 지역가입자 | 45,733 (49,108) | 117,211 (125,861) | 167,711 (180,088) | 192,273 (206,463) | 225,054 (241,663) | 260,122 (279,319) | 291,169 (312,657) | 326,539 (350,638) | 363,427 (390,248) |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 중위소득 120% | 2,007 | 3,417 | 4,420 | 5,423 | 6,426 |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 단 60세 미만의 자가 ㉡의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기준은 유지(신규는 ㉠, ㉡의 요건 충족)

㉡ 대상자 선정 제외 :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에 확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인확진검사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처리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확인원’을 통해 신분확인)
 -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후 원인확진검사비가 지원되었다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다) 지원 범위

① 지원 검사

- 「치매조기검진 확인검사 항목」 표에 열거된 검사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치매조기 확진검사 항목」에 열거된 검사 이외의 검사가 원인확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센터장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음

②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비용

- 진단검사 : 진찰료, 치매척도 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 인지검사비 등 정액 지원(상한 8만원)
- 감별검사 : 치매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 원인확진검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며, 지역사회 통합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치매조기검진확진검사지원항목】

| 검 사 항 목 | | |
|------------------|-------------------|----------------------|
| ○ CBC | ○ 갑상선기능검사(2종) | ○ 요산 |
| - 적혈구수(RBC) | - 갑상선자극호르몬(TSH) | ○ 혈당정량 |
| - 백혈구수(WBC) | - 유리싸이록신(Free T4) | ○ 총 콜레스테롤 |
| - 혈소판수(PLT) | ○ 간기능검사(6종) | ○ 매독(VDRDL) |
| - 헤마토크리트(Hct) | - 총단백정량 | ○ VitB12 |
| - 혈색소(Hb) | - 총빌리루빈 | ○ Folate (엽산) |
| ○ 신기능검사(2종) | - SGOT(AST) | |
| - 혈중요소질소(BUN) | - SGPT(ALT) | ○ EKG |
| - 크레아티닌 | - 알부민 | ○ CPA |
| ○ 전해질 검사(5종) | - 알칼리포스파타제(ALP) | ○ 뇌 MRI 촬영 (뇌 CT 촬영) |
| - 소듐(Na) | | ○ 영상 판독료 |
| - 포타슘(K) | ○ 요검사(7종까지) | ○ PACS 사용료 |
| - 염소(Cl) | | ○ 진찰료 |
| - 인(P) | | |
| - 총 칼슘(Total Ca) | | |

라) 지원 절차

①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이 시행대상자 및 시행검사 결정

② 치매안심센터 수탁(협력) 병원에서 선 검사 시행

- 수탁병원 이외에도 지원범위 기준 내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확진 검사 병원을 확대할 수 있음(반드시 업무협의를 문서화해야 함)
-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2차 병원에서 의뢰를 해야 3차병원 진료가 가능 하므로, 수탁병원인 3차 병원인 경우 2차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뢰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것
- 분기별로 수탁병원(또는 기타 확진검사 시행 병원)에서 검사비 내역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여 비용 신청

※ 구비서류

- ㉠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서식 1-㉠)
-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영수증 사본
- ㉢ 확진검진 의뢰서
- ㉣ 검사내역 및 결과보고서
- ㉤ 비용청구서

5.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가. 사업 개요

1) 목 적

- 가) 지역 내 치매인구에 대한 현황, 치매 유관 기관 서비스 조사 등을 통한 통합적인 사업 전략
- 나) 치매관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다) 치매 사각지대 없이 원스톱으로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라)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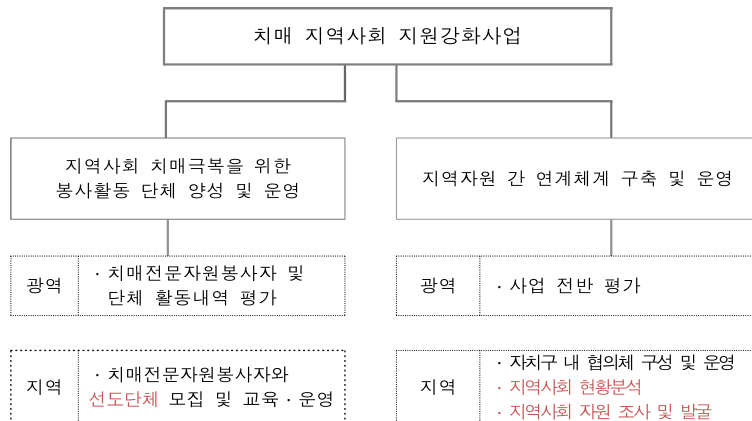
2) 근 거

- 가)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3항
- 나)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2항 1호

3) 내 용

- 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자원조사
- 나)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 다) 지역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4) 추진 체계



나. 사업 내용

1)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 양성 및 운영

가) 목 적 :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및 선도단체의 확대를 통한 치매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 ① (치매극복 선도기업·기관·단체) 지정을 통해 치매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
- ② (치매극복 선도학교) 치매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 과정 개발을 통해 재학생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 확립
- ③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사회 치매정보 허브 구축

나) 사업 내용

①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및 단체 활동내역 평가(별도 보고서 제출)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과 단체 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

② 활동내용(치매전문자원봉사자 및 치매극복봉사모임)

- 가정방문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동행서비스
-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정보 제공
- 인지건강센터 내 인지건강프로그램(비약물 프로그램) 보조
- 가정 내 인지건강프로그램(비약물 프로그램) 진행

③ 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리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 30명 이상, 활동인원 50명 이상 운영관리
- 치매극복봉사모임 :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 ※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 치매극복단체 : 지정신청서를 제출 후 지정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치매극복 기관, 기업, 도서관)

- 치매극복선도학교 : 지정신청서를 제출 후 지정번호 부여받은 학교
(치매극복선도 대학·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 ※ 모집 인원 및 활동 시간 내용 입력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DB)
- ※ 구비서류
 - ㉠ 치매극복선도 기업·기관·단체 신청서(서식 2-㉠)
 - ㉡ 치매극복 선도대학 신청서(서식 2-㉡)
 - ㉢ 치매극복 선도학교(초·중·고) 신청서(서식 2-㉢)
 - ㉣ 치매극복 선도 봉사모임 신청서(서식 2-㉣)
 - ㉤ 치매극복 봉사모임 봉사활동보고서(서식 2-㉤)
 - ㉥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신청서(서식 2-㉥)
 - ㉦ 치매도서관 설치완료보고서 작성(서식 2-㉦)

④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교육

- 치매 기본교육 (치매전문자원봉사모임) : 봉사단 활동영역에 필요한 필수 이론 교육 5시간 시행
(치매관리사업, 치매 전문자원 봉사단과 사례관리, 자원봉사활동, 치매환자보호방법, 지역사회자원연계 각 1시간씩 교육)
- 치매극복단체 및 치매극복선도학교 : 기억친구 교육 진행
- 교육 시행 시기 : 모집 시 진행
- 교육 시행 입력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시행→행사명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치매 기본교육’으로 내용 입력
- 치매 기본 교육 후 보수 교육 혹은 간담회, 평가회 등은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자체적으로 실시

다) 운영 방법 :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매뉴얼 및 치매극복 단체 지침 활용

라)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요건

| 구분 | 요건 |
|-----------|--|
| 치매극복 선도기업 | · 영리목적은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 · 기업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기업의 노하우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
| 치매극복 선도기관 |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공기업·준정부 기관까지 포함 · 기관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기관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

| | |
|------------|--|
| 치매극복 선도단체 | ·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단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
| 치매극복 선도학교 | · 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 ·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 필요 |
| 치매극복 선도대학 | · 최소 단과대학 이상의 규모에서 신청 가능 · 전문대학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 정규교육과정(학점인정)에 치매 교육이 포함 · 해당 과목 수업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
|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 · 공공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관코너를 설치·운영 · 치매도서관코너 설치 및 도서관 담당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필수 |
| 치매극복 봉사모임 | ·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 ·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

마) 치매극복 선도단체 진행방법

- ① 홍보
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 등 관공서)과 학교(초·중등·대학)를 대상으로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사업 홍보
- ② 신청
치매극복 선도단체 신청서 작성하여 단체가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단체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단체 교육 진행
 - 중앙·광역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신청서를 수령 가능
 - 단체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가 상이함으로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유형에 맞는 서식 활용
- ③ 교육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 온라인(웹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를 안내하여 수강
 - 오프라인(대중강연) : 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억친구 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가능
- ④ 등록
신청 및 교육 후 광역치매센터에 단체의 신청서와 함께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요청, 광역치매센터 신청서 취합, 지정요건 수립 여부 확인하여 중앙치매

센터에서 지정번호 수령하여 전달

- 도서관의 경우, 신청 후에 치매도서코너에 배열할 치매관련 간행물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발송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도서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제출완료 해야만 등록이 가능
- ⑤ 지정 : 지정번호를 부여받은 치매안심센터는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
 - (현판)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면 현판 수여, 현판디자인은 중앙·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수령하고, 현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전달

2) 지역사회 현황분석

가) 목적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일정 : 연 1회(1분기 조사)

다) 사업 내용

①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광역 단위 지역사회 현황 분석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 현황분석(연 1회, 1분기)

② 진행방법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③ 세부내용

- 지역사회 노인인구 수
- 경도인지장애 유병현황
- 치매 유병현황

3)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발굴

가) 목적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윈스톱 연계

나) 대상 :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기관 및 제공 서비스

다) 사업 내용

①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취합
 -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상시 업데이트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 자원조사

② 진행방법

-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조사

③ 세부내용

-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 조사
-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시설 조사
-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조사
-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 조사
-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인력 수

4)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가) 목적

- ① 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자기결정권존중,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18. 9. 20일 시행 예정)

나) 사업 내용

① 피후견인

-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나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또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 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치매환자

② 후견인

-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

③ 후견심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되,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 가능

④ 비용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 세부 사업지침은 추후 확정 및 통보 예정(보건복지부)

5)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가) 지원 대상 : 지역 내 치매관련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나) 지원 내용 : 인지건강센터에서 시행 중인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지원 방법 : 지역 내 유관 시설 종사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교육 지원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 승인 시

6) 정보교류, 치매환자 연계(온오프라인을 통한 자원연계)

가) 온·오프라인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 자원 연계 및 정보 업데이트 지원

- ①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 ② 치매 유관 시설 : 해당 시설 정보 업데이트 지원

나) 연계 내용 및 방법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홈페이지 및 온라인 DB 활용

- ① 각 자치구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유관 시설 종사자의 홈페이지 및 DB 활용
- ② 서울시 내 치매 유관 자원 정보(시설 정보, 인력 정보, 서비스 정보 등)

6.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가. 사업 개요

1) 목적

온라인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 참여자·시설 종사자·치매환자가족 및 일반 시민들에게 치매 관련 지식, 시설정보, 인력 및 서비스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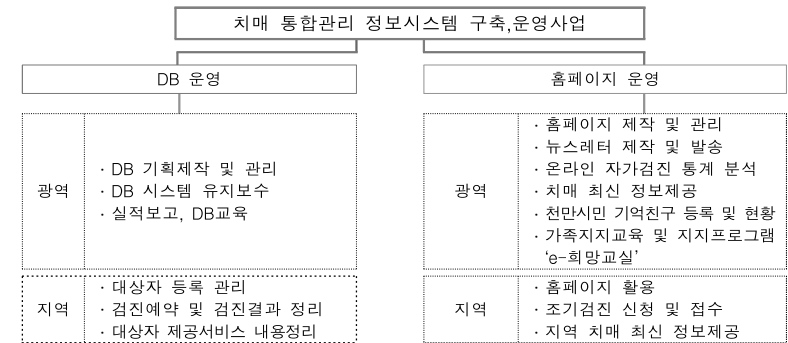
2) 내 용

가) 치매통합관리 홈페이지 운영

서울특별시치매센터홈페이지(www.seouldementia.or.kr, www.seouldementia.kr)와 25개 자치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와 연동

나)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온라인 DB시스템 운영

3) 추진체계



나. 사업 내용

1)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치매관리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목 적

서울특별시치매센터와 25개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업홍보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단위 및 관련 자원 간 연계 강화 및 대시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② 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홈페이지 기획·제작 및 유지 관리
- 다양한 치매관련 콘텐츠 구축 및 정기적 자료 업데이트
 - ① 뉴스레터 발송 및 소식지, 소책자 및 연구자료, 동영상 등 게시
 - ② 천만시민 기억친구 웹 페이지 신설, 치매관련시설 Mapping
 - ③ 웹기반 치매가족 및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웹 페이지 구축
 - ④ 사례관리 및 기억키움학교 DB 운영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치매 자가검진 이용자 통계 분석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및 홍보
- 공지사항 및 일정, 치매관련뉴스 등 광역치매센터와 연동 자동 업데이트
- 조기검진 신청 접수 및 시행

③ 홈페이지 활용 및 기대효과

- 치매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
- 치매관련 온라인 상담(치매종합상담센터) 기능
- 치매환자가족 상호교류의 장 및 치매관련 최신 자료 및 지식 정보제공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치매안심센터 간의 상호 정보전달 기능
- 온라인 자가검진 활성화로 치매 조기검진 관심 유도

나)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운영

① 목 적

서울시 치매 조기검진사업 및 등록 관리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DB화하여 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평가, 분석,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함

② 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DB 기획, 입력양식 제작 및 관리
- DB 사용법 교육, 서울시 전체 자료 평가 및 분석
- DB 유지보수 및 실시간 운영 관리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DB 자료 입력(조기검진, 예방 등록관리, 지역자원강화 사업 내용)
- 해당 자치구 자료평가, 분석, 보고

③ DB 주요 내용

- 검진(등록) 대상자 기본 입력사항(인적사항, 치매위험요인, 질병력 등)
- 검진 단계별 예약 및 결과, 향후 등록일정 등 진행 상황
- 원인확진검사 비용지원 및 치료관리비 지원 내역
- 예방등록관리 서비스 세부 내용(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포함)
- 자치구별 등록 현황, 실적 및 통계 자료, 대상자이관
- 배회인식표 신청 및 결과조회, 사례관리 및 기억키움학교 운영 관련

※ DB 자료 입력 및 수정요청은 월별 마감
 - 수정은 익월 5일까지 요청 가능
 -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접수하여 수정가능
 * 합당한 사유 : 월말이 공휴일인 경우, 사망통보 지연, 치료비 및 검사비, 약제비 지급지연 등 업무 상 사유가 명확한 경우

④ DB 활용 기대효과

-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진 및 등록관리 수행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상황 평가 및 실적 보고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의 치매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자 통계 데이터 확보와 효율적인 사례관리

※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용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 관리

7.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가. 사업별 실적보고

1) 시기별 보고 종류

가) 년 1회 보고 : 예산 정산 (2019년 1월 31일 이내에 제출)

| 교 부 액 | | | 집 행 액 | | | 잔 액 | | |
|-------|-----|---------------------|-------|-----|---------------------|-----|-----|---------------------|
| 계 | 인건비 |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 등) | 계 | 인건비 |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 등) | 계 | 인건비 |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 등) |
| | | | | | | | | |

운영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엑셀파일로 보고

나) 반기 보고 : 인력현황 (2018년 7월 10일 이내, 2019년 1월 10일 이내 제출)

| 직종 | 성 명 | 상근/비상근 | 업무내용* | 치매관련 전문교육 이수 | 전문교육 과정명** | |
|-----------|-----|--------|-------|--------------------|------------|--|
| | | | | | 자격증 | |
| 의사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 간호사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 임상 심리사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 사회 복지사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 작업 치료사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 기타 ()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 기타 () | | 상근/비상근 | | 예 / 아니오 | | |

다) 분기 보고 : 실적 총괄

| 사 업 구 분 | 사 업 실 적 | | 비 고 |
|---------------------|-----------------------------|-------|-----|
| | 건(횟수) | 명(인원) | |
|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 교육 프로그램 시행 | | |
| |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물 관리 실적 | | |
| | 캠페인(메모리 데이) 진행 횟수 | | |
| | 설치물을 이용한 옥외홍보 횟수 | | |
| | 언론 홍보 횟수 | | |
| |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모집현황 | | |
| | 치매안심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치매인식도 조사 | | |
| 치매 조기 검진 사업 | 단계별 검진 | | |
| | 치매 환자 발견 수 | | |
| 치매 예방 등록 관리 사업 | 등록관리 서비스 | | |
| | 치매가족모임 | | |
| |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 | |
| 치매 지역 자원 강화 사업 | 자원봉사자 관리 | | |
| | 치매극복 봉사모임 | | |
| | 치매극복 단체 양성(기관, 기업, 도서관 등) | | |
| | 사례관리 건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건수 | | |

2) 사업별 세부 실적보고 예시

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① 교육 프로그램 시행(강연회 등)

| 사 업 구 분 | 목 표 | | 실 적 | | 달성률(%) | |
|------------|-------|-------|-------|-------|--------|-------|
|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 지역사회 주민 대상 | | | | | | |
| 시설종사자 대상 | | | | | | |
| 치매가족 대상 | | | | | | |
| 합 계 | | | | | | |

※ 교육실적 기준 : 교육시간 50분 이상, 교육인원 5명 이상, 교육 결과보고서(참여자 서명, 사진 포함) 있는 경우

②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물 관리 실적

| 구분 | 공지사항 | 센터활동보고 | 사진첩 |
|----|------|--------|-----|
| 건수 | | | |
| 합계 | | | |

③ 캠페인 진행 횟수 (메모리 데이)

| 사업구분 | 목표 | | 실적 | | 달성률(%) | |
|--------|-------|-------|-------|-------|--------|-------|
|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 메모리 데이 | | | | | | |

④ 옥외홍보 횟수

| 구분 | 홍보 횟수 |
|------------------------|-------|
| 전광판 | |
| 배너(현수막) | |
| 버스, 택시 등 | |
| 기타(IPTV 줄광고, 포스터 게시 등) | |
| 합계 | |

⑤ 언론홍보 횟수

| 번호 | 매체명 | 보도 매체 | 보도 일자 | 제목 |
|----|-------------|--------------------------|-------|----|
| 1 | 중앙언론 | | | |
| 2 | 인터넷 신문 | | | |
| 3 | 그 외 지역 언론 등 | | | |
| 합계 | | 위 보도 방법에 대한 보도 건수를 모두 기재 | | |

※ 중앙언론은 MBC, KBS,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 그 외 지역 언론은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잡지 등

⑥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모집현황

| 사업구분 | 목표 명(인원) | 실적 명(인원) | 달성률(%) 명(인원) |
|---------|-------------|-------------|-----------------|
| 기억친구 | | | |
| 기억친구 리더 | | | |

⑦ 치매안심센터 이용만족도 및 치매환자 실태 조사

| 사업구분 | 목표 | 실적 | 달성률(%) |
|------------|-------|-------|--------|
| | 명(인원) | 명(인원) | 명(인원) |
| 이용만족도 조사 | | | |
| 치매환자 실태 조사 | | | |

나) 치매 조기 검진 사업

① 단계별 검진

| 사업구분 | 목표 | | 실적 | | 달성률(%) | |
|----------------|-------|-------|-------|-------|--------|-------|
|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 선별검진(비정기검진 제외) | | | | | | |
| 정밀검진 1단계 | | | | | | |
| 정밀검진 2단계 | | | | | | |
| 원인확진검사 | | | | | | |

② 치매환자 발견 수

| 선별검진을 통한 등록(명) | 기치매(명) | 외부진단(명) |
|----------------|--------|---------|
| | | |

다) 치매 예방 등록 관리 사업

① 등록관리 서비스

| 사업구분 | 목표 | | 실적 | | 달성률(%) |
|----------------|-------|-------|-------|-------|--------|
| | 건(횟수) | 명(인원) | 건(횟수) | 명(인원) | |
| 상담서비스 | | | | | |
| 방문간호 서비스 | | | | | |
| 치매환자 인식표 제공 | | | | | |
|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 | | | | | |
| 치매예방관련 프로그램 연계 | | | | | |

② 치매가족모임

| 번호 | 일시 | 주제 | 참석인원(명) | 장소 |
|----|----|----|---------|----|
| | | | | |

③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 구 분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합계 |
|-------|-----|-----|----|----|----|----|----|----|----|----|----|-----|----|
| 건(횟수) | | | | | | | | | | | | | |
| 명(인원) | | | | | | | | | | | | | |

④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 대상 | 구 분 | | 목 표 | | | 실 적 | | |
|-----|------------|--|-------|--------|--------|-------|--------|--------|
| | 구 분 | | 횟수(회) | 연인원(명) | 실인원(명) | 횟수(회) | 연인원(명) | 실인원(명) |
| 치 매 | 작업 | | | | | | | |
| | 원예 | | | | | | | |
| | 미술 | | | | | | | |
| | 음악 | | | | | | | |
| | 인정요법 | | | | | | | |
| | 기타(구체적기록) | | | | | | | |
| 고위험 | 작업 | | | | | | | |
| | 원예 | | | | | | | |
| | 미술 | | | | | | | |
| | 음악 | | | | | | | |
| | 인정요법 | | | | | | | |
| | 기타(구체적기록) | | | | | | | |
| 정 상 | 작업 | | | | | | | |
| | 원예 | | | | | | | |
| | 미술 | | | | | | | |
| | 음악 | | | | | | | |
| | 인정요법 | | | | | | | |
| | 기타(구체적 기록) | | | | | | | |

라) 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①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

| 구 분 | 목 표(건) | 실 적(건) | 달성률(%) |
|--------------------------------------|--------|--------|--------|
|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인원 | | | |
|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 | | |
| 치매극복 봉사모임 수 (5인 이상 6회 이상 활동 모임) | | | |
| 치매극복 선도단체 수 (선도기관, 선도기업, 선도도서관 등) | | | |
| 치매극복선도학교 수 | | | |

② 사례관리

| 구 분 | 목 표(건) | 달 성(건) |
|----------------|--------|--------|
| 치매 환자 사례 관리 건수 | | |

③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 구 분 | 목 표(명) | 달 성(건) |
|-----------|--------|--------|
| 가가호호 기억친구 | | |

④ 특화 사업

| 구 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실적 |
|----------|-----|------|------|
| 자치구 특화사업 | | | |

마) 직원의 교육 참여

| 교육 주최 | | 교육명 | 교육횟수(건) | 참여인원(명) | 교육시간(분) | 비 고 |
|-------|----------------|------------------|---------|---------|---------|-----|
| 외부 교육 |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예) | 간호사직군 교육(예) | 1 | 3 | 50 | |
| | 복지부(예) | 경력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예) | 1 | 2 | 60 | |
| 내부 교육 | 000구 치매안심센터(예) | 행정 및 회계 교육(예) | | | | |

※ 외부교육 : 외부에서 치매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

(포함 : 세미나, 학회, 포럼, 심포지엄 등)

제외 : 간담회, 평가회, 워크숍, 신규직원 교육, 치매전문인력 교육 중 신규자 과정)

※ 내부교육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교육시간 50분 이상, 교육인원 5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비교란에 강사를 반드시 입력)

나. 사업별 성과평가

1) 평가 목표

- 가) 자치구 치매관리사업의 사업성과 분석
- 나)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 정책 방향 제시

2) 평가 시기

- 가) 2018년 사업성과 평가(정량평가) : 2018. 11월 중
- 나) 치매관리사업 연 평가(정성평가) : 2019. 1월 중

3) 평가 내용

- 가)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의 적절성
- 나) 세부사업별 달성도 등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4) 평가 방법 : 정성적·정량적 기준에 의거한 성과평가지표 활용

5) 2018년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평가지표(2017. 11. 1. ~ 2018. 10. 31.)-추후 변경가능

| 항목 | 분야 | 성과지표 내용 | 성과목표 | 배점 | |
|--|-------------------------|--|---|--|------------------|
| 사업수행 체계구축 | 사업계획서 | 지역특성 진단, 사업계획 및 목표수립, 사업내용, 예산분배, 인력배치 적절성 |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미흡시 1건당 1점 감점) | 5 | |
| | 사업실행 인프라 구축 | 직원 전문성 증진 교육 횟수 | 내부교육 3회 (미시행 1회당 1점 감점) 외부교육 6회 (미시행 1회당 1점 감점) | 3 3 | |
| | | 회의 및 간담회 참여 | 센터장 간담회 2회 (미참석 1회당 1점 감점) 팀장 간담회 4회 (미참석 1회당 1점 감점) 실무자 간담회 (미참석 0.1점 감점) | 2 4 3 | |
| | | 사업 DB 입력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DB 입력 충실도 | 5 | |
| 사업수행 실적 | 대상자별 교육 참여자 수 | 대상자별 교육 참여자 수 | 일반/학생/주민교육 3,8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치매가족교육 15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시설종사자교육 15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2 2 2 | |
| | | 인식개선사업 | 인식개선사업 | 캠페인(메모리 데이) 2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언론홍보 6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홈페이지 게시물 6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지역친구리더가 양성한 기억친구 수 3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3 3 3 2 |
| | | | 캠페인, 옥외 및 언론홍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억친구 및 리더 모집 실적 | 기억친구 및 리더 모집 1,200명(기억친구리더 50명 이상포함) (미달성 1점 감점) | 3 |
| | 조기검진사업 | | 선별 검진, 정밀검진 | 선별 검진 6,5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치매고위험 재검진자 정밀검진 26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5 5 |
| | 예방등록사업 | 상담 서비스 | 상담 서비스 제공 5,0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5 | |
| | | 방문간호 서비스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2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5 | |
| | | 치매가족모임 운영 | 희망다이어리 또는 헤아림 2회기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2 | |
| | | | 희망메신저 3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2 | |
| | | | e-희망교실 수료 3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2 | |
| | 치매가족 프로그램 운영 충실도 | 3 | | | |
| | 치매상태 평가지 | 치매상태 평가지 입력 5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3 | | |
| | 인지건강센터 운영 | 프로그램 서비스 연인원 11,0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6 | | |
| | 자원강화사업 |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실제 봉사 활동자, 치매극복 봉사 모임 수 (1모임 : 5인 이상 6회 이상 활동) |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3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2 | |
| 실제 봉사활동 신규 및 누적 5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 | 2 | | |
| 치매극복 봉사모임 신규 및 누적 3모임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 | 2 | | |
| 치매극복 단체 (선도기관, 선도기업, 선도도서관), 치매극복 선도학교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 | 치매극복 단체 2개 이상(누적) (미달성 0.5점 감점) | 2 | | |
| | | 치매극복 선도학교 1개 이상(누적포함) (미달성 0.5점 감점) | 2 | | |
| | | 가가호호 기억친구, 기억키움학교, 자치구 특화사업(자율적 운영) | 특화사업 운영 2개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2 | |
| 치매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 사례관리 22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 5 | | | |
| 총 점 | | | | 100 | |

※. 보건소 인센티브 지표는 서울시에서 별도 평가

6) 자치구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

2018년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구 치매안심센터

I. 사업수행을 위한 체계구축

1. 사업실행계획의 타당성
 - 1)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 지역특성 및 배경
 - (2) 사업계획 및 목표
 - 2) 사업내용, 대상자, 목표량, 기대효과
 - 3) 예산정산 및 인력현황
 - 4) 지역사회 사업연계 및 자원 활용 계획
2. 사업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정도
 - 1) 직원 전문성 증진 : 내·외부 교육, 센터장 / 팀장 / 실무자 회의 및 간담회 참여
 - 2) 사업 DB 입력 : 제출 내용 없음 (DB에서 확인)

II. 사업수행 실적

1.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1) 교 육 : 대상별 교육 (일반/학생/주민, 치매가족, 시설종사자, 기억친구 리더 등), 치매 예방 교육 실적(치매예방운동법 포함)
 - 2) 홍 보 : 캠페인(메모리 데이) 횟수, 설치물 이용 홍보건수, 언론홍보 횟수, 홈페이지 게시물 실적,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 리더 모집 현황
2. 치매 조기검진 사업 : 제출 내용 없음(DB에서 확인)
3. 치매 예방등록관리 사업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및 교육실적, 치매가족모임 운영 결과보고서, 특화사업 운영 보고서 (예 : 치매안심마을, 치매주치의제도 등)
4. 치매 지역자원강화 사업 :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위원회 결과보고서, 외부기관 종사자 교육결과보고서, 치매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III. 사업수행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